

■ 세법연구 07-14

주요국의 조세범처벌제도 연구

2007. 12

김진수 · 김정아 · 마정화

세 법 연 구 센 터

Kipf 한국조세연구원

목 차

I. 서 론.....	7
II. 우리나라의 조세법처벌제도	9
1. 조세범의 처벌 현황.....	9
2. 조세법처벌제도	10
가. 개관.....	10
나. 내용.....	11
III. 주요국의 조세법처벌제도	20
1. 미 국.....	20
가. 개관.....	20
나. 내용.....	21
2. 영 국.....	30
가. 개관.....	30
나. 내용	30
3. 일 본.....	34
가. 개관.....	34
나. 내용.....	35
4. 독 일.....	38
가. 개관.....	38
나. 내용.....	40
5. 호 주.....	42
가. 개관.....	42
나. 내용.....	45

6. 캐나다.....	49
가. 개관.....	49
나. 내용.....	50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55
1. 국제비교.....	55
가. 조세법 입법형식.....	55
나. 조세법 현황 공표.....	56
다. 조세법 유형	56
라. 주요 조세범죄 처벌수준.....	58
마. 구성요건 명확성의 측면.....	64
바. 기타.....	65
2. 시사점.....	66
가. 처벌 유형의 정비.....	66
나. 적정한 형량수준 설정	67
다. 구성요건의 명확성 개선	68
라. 법인과 개인의 차등있는 별금형 상한 설정.....	69
마. 조세범죄에 대한 형법상 책임규정 전면적용.....	70
V. 결 론.....	72
참고문헌.....	75
부록 : 주요국의 조세법 관련 법규정(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77
1. 미국의 조세법 관련 법조문(Internal Revenue Code, IRC).....	77
2. 일본의 조세법 관련 법조문	93
3. 호주의 조세법 관련 법조문(Taxation Administration Act 1953)	109
4. 캐나다의 조세법 관련 법조문.....	117

표목차

〈표 II-1〉 조세법 고발실적	10
〈표 II-2〉 우리나라 조세법 유형 및 형사제재	18
〈표 III-1〉 미국의 조세법 처벌 현황	21
〈표 III-2〉 미국의 조세법 유형 및 제재	29
〈표 III-3〉 영국의 조세법 유형 및 제재	34
〈표 III-4〉 일본의 조세법 유형 및 제재	38
〈표 III-5〉 독일의 조세법 유형 및 제재	42
〈표 III-6〉 호주의 조세법 유형 및 제재	47
〈표 III-7〉 캐나다의 조세법 유형 및 제재	53
〈표 IV-1〉 조세법 입법형식 비교	55
〈표 IV-2〉 개별 조세범죄 공표여부	56
〈표 IV-3〉 주요 조세범죄 유형비교	58
〈표 IV-4〉 조세포탈행위 처벌수준 비교	59
〈표 IV-5〉 원천징수세액 불납부의 처벌수준 비교	60
〈표 IV-6〉 세무관련서류 미보관·훼손 등에 대한 처벌수준 비교	60
〈표 IV-7〉 세무관련서류 미신고·미제출에 대한 처벌수준 비교	61
〈표 IV-8〉 세무관련서류 조작·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수준 비교	62
〈표 IV-9〉 세무공무원에 대한 업무집행방해죄 처벌 비교	63
〈표 IV-10〉 세무정보관련 비밀 누설행위에 대한 처벌 비교	64
〈표 IV-11〉 주요국의 허위신고죄 구성요건 비교	64
〈표 IV-12〉 개인과 법인간의 형량차등 여부 비교	65
〈표 IV-13〉 형법이론 적용배제 여부	66

I. 서 론

- 납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은 크게 행정상 제재(가산세, 체납처분 등)와 형사상 제재(징역, 벌금 등)로 구분될 수 있으며, 중대한 납세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처벌을 채택하여 이행 확보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조세범처벌 관련 법령으로는 조세범 구성요건 및 그 처벌을 규정하는 실체법으로서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형법 등과 절차법으로서 조세범처벌절차법,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훈령 등이 있음.
- 현행 조세범처벌법 규정이 오래¹⁾되어 처벌 유형 및 형량 수준의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²⁾이 제기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외국사례 등을 연구·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전체 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하고자 함.
 - 예를 들어 현재 조세포탈시 최고 무기징역 및 포탈세액의 5배 벌금(50억원 이상 벌금도 가능)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과잉처벌 또는 실효성 없는 처벌 등을 이유로 실무에서 적용을 꺼리는 측면이 있음.
 - 또한 각종 명령위반행위의 경우 50만원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제재로 충분한 유형을 조세범처벌법이 규정함에 따라 실제로는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여 조세범처벌법이 제 기능을 못하는 주요 원인이 됨.
- 기존의 법률의 체계, 실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감안할 때 조세범처벌제도를 전

1) 1951년 제정된 이래 일부 개정만 이루어졌다. 1999년 조세범처벌법 전면개편 작업이 추진되었으나, 부처 간 이견으로 무산되었다.

2) 이철송, 『조세범처벌법의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6; 오영근·조현지, 『조세범죄의 유형과 대처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이천현, 「조세형법의 합리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0 등 다수

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조세범처벌에 대한 근거법령은 형법과의 관계에 있어 특별법의 지위에 있지만, 우리나라 고유의 형법체계와 균형을 이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조세부과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제도가 되어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증빙서류 등 신고제출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거의 처벌하고 있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주요 범죄로 다뤄지고 있으므로 각국과의 세무행정시스템과 유기적인 관련을 고려하여 처벌수준을 정하는 데 참작할 필요가 있음.
- 이하에서는 미국 등 주요국의 조세범처벌제도상 처벌 유형 및 형량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의 조세범처벌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II. 우리나라의 조세범처벌제도

1. 조세범의 처벌 현황

- 조세범처벌법상 범칙행위에 관한 규정은 1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개 죄목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 중 실무상 조세포탈죄, 체납죄, 혜위세금계산서 관련 범죄가 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나머지 범죄에 관한 조문들은 사문화되었거나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법원 판례를 보면, 서울시내 5개 법원이 2006년 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선고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사건에서 혜위세금계산서 관련 범죄가 84%를 차지하고, 조세체납 사건이 12%, 조세포탈이 5%를 차지³⁾해 일부 유형의 범죄만 사법판단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국세청 고발실적을 보면, <표 II-1>과 같이 조세포탈과 혜위세금계산서 거래범죄(자료상)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
 - 두 범죄유형 모두 개인보다 법인 형태의 범죄가 더 많음을 알 수 있음(2005년).
 - 조세포탈죄는 2001년 102건에서 2005년 277건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2002년과 2005년에 전년과 비교하여 소폭 감소한 것 이외에는 대체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 자료상범죄는 2001년 1,065건에서 2005년까지 3,725건으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음.

3) 조용주, 「조세범처벌의 문제점과 적절한 양형을 위한 연구」, 『조세연구』 6집, 세경사, 2006, p. 454

〈표 II-1〉 조세범 고발실적

(단위: 건)

연도	합 계			조세포탈범			자료상		
	소계	법인	개인	소계	법인	개인	소계	법인	개인
2001	1,167	**	**	102	**	**	1,065	**	**
2002	1,224	**	**	95	**	**	1,129	**	**
2003	2,272	**	**	164	**	**	2,108	**	**
2004	4,006	**	**	308	**	**	3,698	**	**
2005	4,002	2,117	1,885	277	160	117	3,725	1,957	1,768

주: 1. 해당연도 중에 고발한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

2. **란은 통계생산을 하지 않음.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6

2. 조세범처벌제도

가. 개관

□ 조세범 처벌에 적용되는 법률

- 조세범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들은 개별 세법들과는 별도로 단일법을 두어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조세범처벌법은 특별형법의 성격을 지니므로, 조세범의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양형 등의 해석은 일반 형법이론을 따름.
- 조세포탈죄와 위장세금계산서 수수 등에 관한 범죄를 처벌함에 있어 포탈세액 또는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함.
- 관세에 대한 조세범 처벌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1장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에 관한 조세범 처벌은 「지방세법」에서 조세범처벌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⁴⁾.

4)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 세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조세범처벌법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음. 본세 및 가산세의 징수에 영향을 주지 않음.

나. 내용⁵⁾

1) 무면허주류제조 및 판매

- 주류의 제조와 판매를 하는 자가 주세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않을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됨.
- 이러한 범죄행위는 결국 주세와 부가가치세의 포탈로 이어지기 때문에 간접적 탈세범이라고도 함⁶⁾.

- 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 맥술, 술엿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됨(조세범처벌법 제8조).
- 무면허로 제조 또는 판매한 주류에 대한 주세금액의 3배가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까지 벌금을 부과하여, 무면허 주류를 대량으로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한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2) 조세포탈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를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세목에 따라 달리 처벌하고 있음(조세범처벌법 제9조).
-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포탈세액, 환급세액, 공제받은 세액을 말함)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5) 조세범처벌법상 범칙행위는 1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처벌행위와 형벌을 직접 규정한 죄목은 10개이다. 여기에 세무대리인의 허위신고를 추가하여 11개의 유형에 대해 기술한다.

6) 안대희, 『조세형사법』, 법문사, 2005, p. 106.

- 인지세 포탈은 징역형은 없고, 증서 · 장부 1개마다 포탈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를 부과함.
- 그 밖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내국세 포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원 이상 되는 경우는 모든 세목에 걸쳐 처벌 수준을 가중하고 있음. 최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및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함(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조세포탈’이 되기 위해서는 세수의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국가의 과세권을 현실적으로 침해하여야 함.
- 조세포탈 방식은 협의의 조세포탈, 부정공제 및 부정환급으로 구분함.
- 협의의 조세포탈은 정당하게 납부해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하는 것을 뜻함.
- 부정환급은 정당하게 환급받을 수 없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정당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급받는 것을 말함.
- 부정공제는 정당하게 공제받을 수 없는 세액을 공제받거나 정당하게 공제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공제란 세액공제만을 뜻하므로 부정소득공제는 조세포탈로 보게 됨⁷⁾.

-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려면 세수의 감소 초래 외에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실무적용상 어려움이 있음.
- 대법원은 부정행위의 개념에 대해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⁸⁾ 또는 ‘조세의 부과 ·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⁹⁾로 판시하고 있음.

7) 안대희, 전계서, p. 172.

8) 대법원 1984. 5. 29. 선고 81도373판결 등

9)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355판결 등

- 또한 대법원은 ‘적극적인 행위’(사전소득은닉행위)가 수반되지 않으면 미신고, 과소신고, 허위신고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¹⁰⁾고 보고 있음.
 - 이는 그러한 행위로 인해 세수 부족이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용이하게 소득은 닉사실을 알 수 있는 행위 또는 비난 가능성의 약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포탈죄와 같은 중죄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함.
- 여기서 적극적인 행위는 ‘부작위’도 포함함.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부작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함¹¹⁾.
- 부정행위의 양태는 세목에 따라 달리 나타남. 예를 들어, 법인세 및 소득세와 같은 소득의 포탈은 이종장부 작성 등 장부조작 행위와 기업회계의 분식에 관련된 소득은닉행위의 형태로 주로 이루어지고, 부가가치세의 포탈은 세금계산서의 허위교부와 수수의 형태로 주로 이루어짐¹²⁾.

3) 체납

-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의 상습적인 체납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의 별금으로 처벌하여 국세징수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있음(조세범처벌법 제10조).
- 납부기한 안에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또는 가산세의 부과를 통해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지만, 전과가 남지 않는 행정상 금전적 제재로는 악질적인 체납범을 실효성 있게 처벌하기 어려움.
- ‘정당한 사유’에 대해 대법원¹³⁾은 천재, 지변, 화재, 전화(戰禍)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납세자 또는 그

10)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도869판결, 대법원 2004. 4. 21. 선고 99도5355판결 등

11) 대법원 1988. 2. 9. 선고 84도1102판결

12) 안대희, 전계서, p. 265.

13)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2858판결

동거가족의 질병, 납세자의 파산선고, 납세자 재산의 경매개시 등 납세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세가 곤란한 사유를 포함한다고 판시함.

-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하며, 체납횟수를 계산할 때 수 개의 회계연도에 걸쳐 통산할 수 없음¹⁴⁾.
- 체납횟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하고, 위법한 납세고지서는 체납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납세고지서 등에 수 개의 조세가 함께 기재되어도 각 세목별로 체납횟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며¹⁵⁾, 중간예납, 수시부과, 예정신고에 의한 조세를 체납한 경우 각각 하나의 체납으로 계산됨.

4)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않는 경우(부징수) 또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불납부)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조세범처벌법 제11조).
- 부징수는 소득이 현실로 지급되어야 성립되므로, 경영부진 등으로 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고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않거나 의제지급¹⁶⁾으로 보는 경우에는 부징수죄가 성립하지 않음.

5) 세금계산서 관련 위반

-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의 과세자료가 되는 증빙서류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14) 안대희, 전계서, pp. 110~112.

15) 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도5725판결

16) 법인의 손금부인, 익금산입에 의한 소득처분의 경우 세무서장이 결정일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해 통지하고 그러한 인정상여, 인정배당 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의제된다.(법인세법 제6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관련범죄는 조세포탈과 직결되는 중대한 범죄로 보게 됨. 이에 따라 일반적인 증빙서류 관련범죄(제13조 제4호)와 구분하여 중하게 처벌하고 있음(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 세금계산서 미교부와 허위기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산출세액의 2배 이하 벌금으로 처벌함.
- 세금계산서 수취불성실과 세금계산서 교부방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함.
- 위장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 · 제출(자료상 행위)과 자료상 행위의 알선 · 중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산출세액의 2배 이하 벌금으로 처벌함.

- 위장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처벌 수준을 가중하는데, 최고 3년 이상 유기징역과 함께 산출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함께 부과함(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6) 체납처분 면탈 등

- 조세의 징수권을 보호하기 위해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면탈하거나 압수 물건을 은닉 또는 훼손하는 경우 벌금형의 여지없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함. (조세범처벌법 제12조)

- 이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¹⁷⁾와 동일한 범죄이지만,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됨에 따라 형법이 적용되지 않고 세무공무원의 범칙조사에 의해 형벌이 아닌 통고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는데, 범칙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 수사기관의 수사에 맡기도록 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¹⁸⁾.

17)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27조).

18) 안대희, 전계서, p. 133.

7) 납세증명표식의 불법사용

- 납세증명표지의 재사용과 불법양도, 위조 또는 변조, 위조·변조한 납세증명표지의 소지와 교부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함(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2 제1-3호).
- 납세증명표지는 주로 유통과정에서 조세포탈의 염려가 많은 물품을 대상으로 식별을 통해 조세포탈을 방지하기 위해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그 불법사용은 주세 또는 특별소비세의 포탈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아 비교적 높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임¹⁹⁾.

8) 세무대리인의 허위신고

-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하는 제3자가 타인의 조세에 대해 허위의 신고를 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2 제7호).
- 이 규정은 실무상 적용사례가 거의 없는데, 탈세상담을 한 세무사 등에 대한 처벌규정²⁰⁾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
- ‘납세증명표식의 불법사용 등’에 관한 조항 아래에 이러한 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타인 조세의 허위신고는 납세증명표식과 관련이 거의 없는 범죄로서 독자적인 조항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음.

9) 기장의무위반 등

-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주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규정상 장부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함(조세범처벌법

19) 안대희, 전계서, p. 138.

20) 우리나라 세무사법은 탈세상담 등을 금지하나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데, 일본의 조세범처벌법은 탈세상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제12조의 3 제1항).

- 부가가치세법 등 간접세는 거래세로서 거래장부 등 세무자료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가산세 외에 형별로 그 비치의무를 강제하는 반면, 법인세, 소득세와 같은 직접세에 관한 기장의무불이행시 각 세법상 가산세만 부과됨.

- 기타의 세법상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소각·파기·은닉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함(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 3 제2항).

- 법인이 결손금액을 과대계상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산출세액의 3배 이하 벌금으로 처벌함(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 3 제3항).
- 결손금이 발생하면 환급해주는 세제는 결손금과대계상에 의한 환급을 조세포탈 범으로 처벌하면 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이월공제를 원칙으로 하고 이월공제 기간이 장기간인 세제는 당해 연도에 조세포탈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아도 결손금과대계상 자체를 별도로 처벌할 필요가 있어 규정함²¹⁾.

10) 명령사항위반 등

- 세법상 각종 명령사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있음(조세범처벌법 제13조).
- 신고의무해태, 허무인 명의사용, 지급조서 등 제출해태, 장부와 영수증 허위기재, 검사·승인 미필, 미납세 또는 면세물품의 사용, 미검정기계 등 사용, 질문검사기피, 무면허주류 등의 소지·판매, 부정주정구입, 인지미소인, 사업자등록 미필행위가 처벌대상이 됨.

21) 안대희, 전계서, p. 117.

11) 조세 신고 · 납부 방해

- 신고해태, 부징수, 불납부를 선동 · 교사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이를 목적으로 폭행 · 협박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음(조세범처벌법 제14조).

〈표 II-2〉 우리나라 조세범 유형 및 형사제재

위반행위	형 량		징역·벌금의 병과여부
무면허주류제조 · 판매 죄(§8)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당해주세의 3배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300만원 초과가능)		임의적 병과
조세포탈죄(§9)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이하 벌금	"
	인지세	포탈세액의 5배 이하 벌금 또는 과료	"
	나머지국세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	"
	포탈세액 등 연간 5억 이상 10억 미만	3년 이상 유기징역과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필요적 병과
	포탈세액 등 연간 10억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포탈세 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
체납죄(§10)	1년 이하 징역 또는 체납액 상당 벌금		×
원천징수의무불이행죄 (§11)	1년 이하 징역 또는 미납세액 상당 벌금		×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허위기재죄(§11의2 ①)	1년 이하 징역 또는 산출세액의 2배 이하 벌금		×
세금계산서 수취불성실죄 (§11의2 ②③)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장세금계산서 수수등에 관한 죄 (§11의2 ④⑤)	공급가액등합계액이 30억 미만	3년 이하 징역 또는 산출세액 2배 이하의 벌금	임의적 병과
	공급가액등합계액이 30억 이상 50억 미만	1년 이상 유기징역 및 산출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필요적 병과
	공급가액등합계액이 50억 이상	3년 이상 유기징역 및 산출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

〈표 II-2〉의 계속

위반행위	형량	징역·벌금의 병과여부
체납처분면탈죄 (\\$12①②)	2년 이하 징역	×
체납처분면탈방조죄 (\\$12③)	1년 이하 징역	×
납세증명표식의 불법사용(\\$12의2)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임의적 병과
기장의무위반죄 (\\$12의3①)	50만원 이하 벌금	×
장부 및 증빙서류 소각등의 죄(\\$12의3②)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임의적 병과
결손금과대계상죄 (\\$12의3③)	2년 이하 징역 또는 산출세액의 3배 이하 벌금	"
명령사항 위반등(\\$13)	5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	×
신고 · 납부위반 선동 · 교사죄(\\$14①)	2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	×
신고 · 납부위반목적 폭행 · 협박죄(\\$14②)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	×

주: '병과'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하는 것을 말하며, 규정상 병과할 수 없는 경우는 징역형과 벌금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선고해야 함.

III. 주요국의 조세범처벌제도²²⁾

1. 미국

가. 개관

□ 조세범처벌 규정

- 연방세법(The Internal Revenue Code: IRC) 제75장에서 미국 조세법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미국연방형법(Title 18 of the United States Code, USC)상의 공범죄, 우편사기죄, 방조죄, 교사죄, 조직범죄(RICO), 그리고 위증죄 등으로도 처벌되고 있음. 미국연방형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형법상의 범죄들은 연방세법(IRC)상의 처벌규정에 비하여 형사소송시 중요한 이점들이 있어서 연방세법상 조세범규정을 보충하는 역할을 함²³⁾.
- 또한 조세법에 대하여는 연방세법(IRC)과 통화거래 관련 규정들(Title 31 of the United States Code)에 의하여도 처벌이 가능함.
- 조세법규 위반에 대한 민사상의 벌과금 규정은 형사상 형벌규정과 동시에 부과될 수 있음.

□ 조세범 처벌 현황

- 미국 국세청은 조세 관련 범죄들을 직접 조사, 기소 요청을 하고 있으며, 매년 그러한 조세범들에 대한 조세범처벌 현황을 발표하고 있음. 다음 <표 III-1>은 최근 3년간 주요 조세 관련 범죄들의 유형과 형별 선고 현황임.

22) 이하 주요국의 입법례는 각국의 조세법과 기본형법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므로, 조사되지 않은 특별법 규정에 의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3) 본장의 가, 나, 다, 참조

〈표 III-1〉 미국의 조세범 처벌 현황

(단위: 건)

범죄유형	2007년	2006년	2005년
일반조세범	781	691	804
세무준비자의 신고관련 범죄	123	109	118
세무계획관련 범죄	77	88	70
미신고자 범죄	278	270	280
고용관련 조세포탈죄	45	52	52
회사 관련 조세포탈죄	51	36	51
금융기관 관련 범죄	113	111	81
돈세탁 관련 범죄	758	800	782

자료: IRS, 미국 국세청 홈페이지 『Criminal Enforcement Statistics Data』(www.irs.gov)참조

나. 내용

1) 연방세법상 조세범(Criminal Provisions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가) 조세포탈죄(Evasion – 제7201조)

- 연방세법상의 조세의 부과와 납부를 고의로 포탈 또는 침해하려고 한 자는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중죄로 처벌됨.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달러 이하(법인의 경우는 50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양자 병과가 가능. 민사상 벌과금 기타 다른 법률상의 처벌도 가능하며, 형사소송비용도 부과됨.
- 조세포탈죄의 성립요건은 조세포탈의 고의, 납세의 포탈 내지 기도된 포탈을 구성하는 적극적인 행위, 납세액의 부족임.
 - 법률상의 납세의무 및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위반하여 조세부과를 면하려는 조세포탈의 고의가 필요.
 -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 혀위의 신고서임을 알고 있어야 하며, 다른 동기의 유무와 관계없이 포탈의 의도가 있는 한 조세포탈의 고의는 인정

됨. 납세의무가 없었다고 생각한 경우 고의 조각.

- 조세를 포탈하거나 또는 그것을 침해하고자 하는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 내지 적극적인 시도가 필요함.
 - 적극적인 행위란 단순한 고의의 불납부 또는 불신고가 아니라 조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의도를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행위임.
 - 계속된 과다공제, 가명 또는 차명의 재산보유, 법인자산의 개인적 용도 전용, 은행계좌의 은닉 등이 대표적 유형임.
- 조세포탈의 결과 납세부족액, 즉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당세액과의 차이가 발생하여야 함.
 - 납세부족액의 존재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포탈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됨.

나)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및 불납부(Willful Failure to Collect or Pay Withholding Tax – 제7202조)

- 법률상 조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명세서를 작성,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고의로 이를 징수하지 않거나 성실히 이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죄로 취급하고, 법에 의한 여타의 처벌에 병행하여 1만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양자를 병과할 수 있음.

다) 신고 · 납부의무불이행(Willful Failure to File, Supply Information, or Pay the Tax – 제7203조)

- 조세를 신고 ·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고의로 태만히한 자는 경죄로 처벌됨.
 - 고의로 기한 내에 조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고의로 법규에 의하여 요구되는 신고서의 제출, 기록의 비치, 소정 과세자료의 제출 등의 행위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경죄(misdemeanor)로서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5천달러(법인의 경우에는 10만달러)이하의 벌금에 처함. 형사기소비용과 함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가능.

- 신고 · 납부의무 불이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신고, 납부, 기장, 과세 정 보의 제출의무가 있을 것, 둘째로 그러한 의무를 위반한 무신고, 불납부 등의 행위 가 있을 것, 셋째로 법정기한을 위반하는 행위일 것, 넷째로 그러한 부작위가 고의 에 의할 것이 필요.
- 본항은 신고 · 납부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이며, ‘적극적 위반행위’를 구성 요건으로 요구하지는 않음. 제7201조 조세포탈죄의 적극적인 조세회피 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본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처벌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라) 허위신고죄 및 방조죄(Fraud and False Statements – 제7206조)

- 허위진술서 내지 허위신고서의 작성 · 제출(제7206조 제1항), 허위진술 등의 원 조 · 방조(제7206조 제2항)는 중죄로 처벌.
- 허위신고죄(제7206조 제1항)
 - 고의로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제7206조 제1항에 의해서 중죄로 처벌.
 - 위증의 별을 받기로 선서한 서면진술에 의하여 증명하는 신고서, 진술서, 기타 문서에 진실하고 정당하다고 믿지 않으면서 고의로 이러한 문서를 작성하 거나 이러한 문서에 서명하는 경우 본 규정에 의하여 중죄로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달러(법인의 경우 50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병과 가능).
 - 구성요건으로는 첫째 국세청에 제출되는 신고서 기타의 서류가 실제로 피고 인에 의해서 위증의 별을 받기로 서명되어 있고, 둘째 중요한 허위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셋째 그 문서상의 중요한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지 않으면서 서명하고, 넷째 허위의 신고가 고의로 이루어져야 함.
 - 본항은 허위의 신고를 중죄로 처벌하는 한편 조세채권의 존재를 성립요건으 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7201조의 조세포탈죄를 보충하는 효과를 가짐.
- 허위진술 등의 원조 또는 방조(제7206조 제2항)
 - 타인의 허위 또는 부정한 신고서, 청구서 기타 세무와 관련된 일체의 문서의 작성이나 제출을 방조, 주선, 협의 또는 자문하는 행위도 중죄로 처벌됨.

- 즉 세법상의 신고서, 선서진술서, 청구서 기타 문서의 준비 또는 제출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고의로 사위 또는 혐의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조력하거나, 주선, 상담 또는 조언을 한 행위에 대하여 중죄로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달러(법인의 경우에는 50만달러)이하의 벌금에 처함. 형사기소비용을 포함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가능.

마) 혐의문서의 제출(Submitting a False Document – 제7207조)

- 고의로 국세청에 주요 내용이 사위이거나 혐의인 목록, 신고서, 회계계정, 진술서 기타 문서를 제출한 자는 경죄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달러(법인의 경우에는 5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함.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음.
- 이 죄는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중죄인 제7206조 제1항의 혐의신고죄와 구별됨. 첫째로 혐의문서 제출의 경우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는 서명이 필요없고, 둘째로 혐의신고죄의 경우는 문서에 서명한 자만이 처벌받는 데 비하여, 본 조문은 문서를 제출한 자는 모두 처벌받음. 즉 다른 사람이 서명한 혐의문서를 제출한 자는 본 조문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

바) 연방세법 집행의 방해죄(Impeding or Obstructing Administration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 제7212조 제a항)

- 연방세법 집행 방해죄로서 다음의 두가지 행위는 중범죄로 처벌됨.
 - 부정한 방법, 혹은 무력이나 위협을 통하여 공무원들이나 관련 종사자들의 공무 집행을 협박하거나 방해하려는 행위.
 - 그 밖의 부정한 방법 혹은 무력이나 위협을 통하여 세법의 정당한 집행에 협박하거나 방해하려는 행위.
- 연방세법 집행 방해죄에 대해서는 최고 3천달러까지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 공무원이나 관련 종사자들 혹은 가족들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5천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

사) 정부업무 종사자들의 범죄(Criminal Activities of Government Employees – 제7213조)

- 제7213조는 전 · 현직 정부 근무자들이 세무신고 관련 자료를 허가 없이 노출하는 행위를 중범죄로 규정함.
- 1997년 연방국회에서 제정한 Taxpayer Browsing Protection Act에 따라 연방세법(IRC)에 제7213A조가 신설되었음. 제7213A조에서는 공무원들이 고의로 정당한 권한없이 세무신고자료를 조사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음.

아) 의뢰인 세무신고정보 무단유출(Preparer Disclosure of Unauthorized Return Information – 제7216조)

- 유료로 세무절차를 준비해주는 자가 신고자료를 납세자의 허가없이 유출시키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임.
- 본법에 대한 처벌은 1천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병과 가 가능.

2) 연방형법상 관련범죄(Title 18 of The U.S. Code)

- 연방세법(IRC)에서 규정하는 조세범죄들 외에 연방형법상 형별규정들에 의해서도 같은 행위에 대하여 처벌 가능.

가) 공모(Criminal Conspiracy – 연방형법 제371조)

- 조세범죄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규정 중 하나로, 조세범에 대한 공모자는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
- 공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두 사람 이상의 합의
- 미국정부에 대한 범죄나 기타 방법을 통한 사취의 목적
- 공모한 행위의 착수 이상의 행위

나) 허위진술(False Statements – 연방형법 제1001조)

- 계획적으로 혹은 사기, 거짓문서 등으로 미국정부 관할하의 중요 문제를 거짓으로 제시하거나 숨기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속이는 행위를 중범죄로 규정. 연방소득세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형법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 외에도 본 범죄로 처벌가능.

다) 위증죄(Perjury – 연방형법 제1621조)

- 구두 혹은 문서상 선서했음에도 거짓임을 알고서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구두로 혹은 문서로 위증하는 자에 대하여 중죄로 처벌.

라) 우편, 기타 통신 사기죄(Mail Fraud and Wire Fraud – 연방형법 제1341조, 제1343조)

- 연방형법 제1341조에서는 사기행위를 위해 우편을 사용한 경우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343조에서는 전보나 라디오, 텔레비전 등을 통하여 허위사실의 화면이나 문자, 소리 등을 보내어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음. 제1341조와 제1343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는 20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병과 가능), 금융기관에 피해시 100만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30년 이하의 징역(병과 가능)에 처함.

마) 조직범죄(RICO – 연방형법 제1961조 이하)

- 부정부패범 조직범죄 방지법(the Racketeering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Act, RICO)은 1970년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범죄 규제법(The Organized Crime Control Act)의 한 부분으로 입법되었으며, 연방형

법 제 1961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음.

- 조직범죄(RICO) 소송을 위해서는 정부는 “기업(enterprise)”과 그 기업과 관련된 “갈취행위의 유형(pattern of racketeering activity)”의 존재를 증명해야 함.
- 중요한 우편이나 통신상 허위 행위를 통한 조세사기행위는 RICO에 따라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대부분의 조세범은 RICO하의 범죄에 해당되지 않지만, 우편과 통신상 사기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 RICO 범죄에 대해서는 2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만달러 이하의 벌금이 처하거나 병과 가능. RICO는 다른 형법법규와는 다르게 광범위한 몰수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임. 예를 들어, 범죄적 사업을 통해 얻은 자산 모두를 몰수할 수 있음.

3) 통화거래 관련 범죄(Currency Transaction Offenses)

가) 돈세탁(Money Laundering – 연방형법 제1956조부터 제1957조까지)

- 레이건정부에서 마약과 조직적 범죄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기간중 1986년 돈세탁 방지법(The Money Laundering Control Act)이 제정됨. 이에 따라 연방형법 제1956조에서는 범죄성 사업을 하기 위하여 또는 특정 위법행위를 은닉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들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음. 제1957조는 범죄행위를 통해 얻은 1만 달러 이상의 자산 관련 거래에 알면서 가담하거나 가담하려고 한 제3자에 대한 처벌규정임. 제1957조에 따라 제3자의 해당 자산을 예치시키거나, 이전시키거나 인출하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음. 돈세탁 관련 규정들은 기존의 연방세법상 범죄규정에 비하여 좀더 형벌이 과중하며 민형법상 몰수, 박탈 규정이 있음.

나) 현금거래보고(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 연방형법 제6050I조)

- 제 6050I조에 의하면, 사업 중 현금으로 1만달러 이상 받은 자는 국세청에 현금거래보고(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 신고를 하도록 규정.
- 해당 보고에는 Form 8300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며, 지급받은 자들의 명단과 지급한 자의 납세자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TIN)를 명시하여야 함.

- 이러한 통화거래에 있어 보고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여러 작은 거래로 나누거나, 당사자에게 그러한 거래를 하도록 조언한 자에 대하여도 조세법으로 처벌됨.
- 제6050I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경우 2만 5천 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이 처해지거나 병과됨. 만일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2만 5천 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병과가능.

다) 은행비밀법(The Bank Secrecy Act)²⁴⁾

- 연방세법 제6050I조가 교역 및 사업관련 규정이라면, 은행비밀법은 금융기관에게 적용되는 규정임. 1만달러 이상의 모든 통화거래에 대하여 현금거래보고(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 신고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1만달러 이상 외국과 거래하는 경우 미국 관세청(U.S. Custom's Office)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고의로 은행비밀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구금과 벌금에 처함.

4) 조세법에 대한 연방 양형 가이드라인(Federal Sentence Guidelines In Tax Offenses)

- 1984년 미국 연방의회는 미국양형협회(U.S Sentencing Commission)를 설립하였고, 보다 일관되고 공평하며 비례에 맞는 양형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도록 함. 이에 따라 작성된 양형 가이드라인은 1987년 11월 1일 이후의 모든 연방형법상의 범죄에 적용됨.
- 본 양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세손실액과 특별 고려사항, 가중이나 감경사항(예를 들어 범죄행위에서 주된 역할을 담당한 사실, 혹은 단지 묵인한 사실 등), 기소자의 전과를 고려하여 양형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특히 조세범의 심각성과 조세범 방지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연방 양형 가이드라

24) 은행비밀법은 두가지 title로 구성: Title I은 Title 12 of the U.S. Code에 있으며, 금융기관에게 5년 동안 특정 기록들을 보관하도록 규정; Title II는 Title 31 of the U.S. Code에 있으며, 금융기관에게 특정 내외국 거래들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에서는 조세범의 벌금형과 구금형의 형량을 상향 조정하였고, 보다 실형 선고가 용이하도록 조정되었음.

- 실제 양형 가이드라인 작성 이후, 조세범에 대한 형기가 장기화되고 실형 판결도 증가된 것으로 분석됨.

〈표 III-2〉 미국의 조세범 유형 및 제재

위반행위	제재
조세포탈죄 (IRC 제7201조)	개인: 10만달러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병과 가능) 법인: 50만달러 이하의 벌금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및 불납부 (IRC 제7202조)	1만달러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병과 가능)
신고·납부의무 불이행 (IRC 제7203조)	개인: 2만5천달러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병과 가능) 법인: 10만달러
허위신고죄 및 방조죄 (IRC 제7206조)	개인: 10만달러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병과 가능) 법인: 50만달러 이하 벌금
허위문서의 제출 (IRC 제7207조)	개인: 1만달러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병과 가능) 법인: 5만달러 이하 벌금
연방세법 집행의 방해죄 (IRC 제7212조 제(a)항)	3천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병과 가능), 공무원이나 가족들에게 폭행을 사용한 경우 5천달러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병과 가능)
정부업무 종사자들의 범죄 (IRC 제7213조)	5천달러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병과 가능)
의뢰인 세무신고정보 무단 유출 (IRC 제7216조)	1천달러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병과 가능)
공모죄 (연방형법 제371조)	25만달러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병과 가능)
허위진술죄(연방형법 제1001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병과 가능)
위증죄(연방형법 제1621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병과 가능)
우편, 기타통신 사기죄 (연방형법 제1341조, 1343조)	20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병과 가능), 금융기관에 피해시 100만달러 이하 벌금이나 30년 이하의 징역(병과 가능)
RICO(연방형법 제1961조 이하)	2만달러 이하 벌금이나 20년 이하 징역(병과 가능)
돈세탁방지법 (The Money Laundering Control Act)	50만달러 이하 금액과 해당자산의 두배 금액 중 큰 금액의 벌금이나, 20년 이하 징역(병과 가능)
통화거래보고의무 위반 (연방세법 제6050I조)	2만 5천달러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병과 가능), 고의의 경우 2만 5천달러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병과 가능)
은행비밀법	5년 이하의 구금과 벌금

2. 영 국

가. 개관

조세범처벌에 적용되는 법률

- 조세포탈행위에 대하여는 조세관리법(Tax Management Act 1970, TMA)에 의해 벌과금으로 처벌.
 - 영국에서의 탈세는 부당한 조세감면청구, 은행이자 등 투자소득의 신고 누락, 사업자의 부실장부의 제출 등이 주요 위반행위로 나타나고 있음²⁵⁾.
- 일반 형법, 보통법(Common Law),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관세법 등에 의하여 형사법으로 처벌될 수 있음.
- 각종 벌과금이 부과된 경우에도 형사상 조세범에 대한 처벌이 병행하여 처벌될 수 있음. 심각한 조세규정의 위반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이 진행되며, 이에 따라 구금이나 벌금이 부과됨.

조세범처벌 특성

- 국세청은 형사상 조세범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보통의 경우 벌과금을 부과함. 국세청이 형사상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등의 소송 준비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임. 형사상 소송은 중대한 조세범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거치는 단계로 보고 있음.

나. 내용

1) 성문 형법상 범죄

조세범에 대하여 영국 국세청에서 제소할 수 있음. 성문의 형법상 범죄는 다음과 같음²⁶⁾.

25) 오영근 · 조현지, 『조세범죄의 유형과 대처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p. 55.

- 허위 신고(Making False Return)
- 절도(Theft)
- 허위회계(False Accounting)
- 위조죄(Forgery)
- 위의 범죄들을 방조, 교사, 조력한 자들도 본범과 같이 처벌됨(선동하거나 해당해당범죄를 공범하기로 동의하거나, 시도한 경우 등).

2) 소득세에 대한 형벌

소득세 포탈죄

- 2000년 재정법 제144조에 따라 소득세법상 “소득세 포탈죄(Offence of Fraudulent Evasion of Income Tax)”가 새롭게 조세범으로 신설됨. 이 규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후부터는 직접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소득세를 허위로 회피하게 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조세범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되었음. 이 규정에 따라 2004년에 처음으로 “소득세에 대한 조세포탈죄”에 의한 기소가 제기됨.
- 약식 기소의 경우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천파운드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 가능)되며, 정식기소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무제한)이 부과됨(병과 가능).

세액공제를 통한 조세포탈죄

- 세액공제법(Tax Credit Act, TCA)에 따라 세액공제를 통한 조세포탈죄가 신설됨(TCA 2002, s 35). 이 규정에 따르면 세액공제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허위 행위를 한 경우 범죄로 처벌.
- 정식기소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이 부과되거나 병과됨. 약식 기소의 경우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되거나 병과됨.

26) Forgery and Counterfeiting Act 1981, s. 1, 3; TMA 1970, s. 104; Theft Act 1968, s. 1, 17; Perjury Act 1911, s. 5(b)

- 그 밖에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에 의해 허위로 제시하거나 파괴하는 경우 조세법으로 형벌을 부과할 수 있으며²⁷⁾, 국세청의 수색에 대하여 직접 혹은 그 고용자로 하여금 막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도 조세법으로 보아 형벌을 부과할 수 있음²⁸⁾.

3)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에 대한 위반행위의 대부분은 민사상 벌과금에 처해지며, 몇 가지 중대한 허위행위에 의해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들만 형사적 위반행위로 보고 조사를 시작하게 됨. 형사상 조사에 대한 권한은 영국 국세청에 있음.
- 부가가치세 포탈죄(Fraudulent Evasion of VAT)²⁹⁾
 - 당사자가 직접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회피하는 경우 부가가치 세 포탈죄로 보고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 조세법에 대한 책임은 세무계산에 대한 책임은 달라서 아니라 반환받는 금액에 대한 허위 과잉기재도 포함됨.
 - 이에 대한 형벌은 약식기소와 정식 기소에 따라 다름. 약식기소의 경우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위반한 벌금의 3배와 최고벌 금액³⁰⁾ 중 높은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되며 병과가능함. 정식기소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며 병과가능.
- 허위문서 제출 혹은 허위진술(False Documents and Statements)³¹⁾
 - 부가가치세 회피 목적을 위하여 허위로 문서를 작성, 제공, 송부 그 밖의 행위를 통한 허위행위를 한 경우, 혹은 간접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또는 부가 가치세상 목적을 위하여 허위인 사실을 알고도 거짓정보를 제공한 경우 본 형사

27) TMA 1970, s. 20A, 20B, 20BB

28) TMA 1970, s. 20C; Inland Revenue Regulation Act 1980, s. 11

29) VATA 1994, s. 72(1)(2)(9)

30) 현재 최고 벌금액(statutory maximum)은 5천파운드이다.

31) VATA 1994, s. 72(3)–(7)(9)

상 조세범에 해당됨.

- 약식기소의 경우 성문의 최고금액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미만의 징역에 처함(병과 가능). 정식기소의 경우 벌금이나 7년 이하 징역(병과 가능)에 처함.

조세회피행위의 인지(Knowledge that evasion intended)³²⁾

-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지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회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경우, 형사상 조세범으로 처벌하고 있음. 약식기소를 통하여 제5단계의 벌금³³⁾과 회피된 부가가치세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벌금을 부과함.

뇌물죄와 공무원의 업무방해죄(Bribery and Obstruction of Officers)³⁴⁾

- 국세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제안한 자이거나 그러한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은 약식기소에 의하여 5천파운드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체포될 수 있음.
- 공무원을 방해하거나, 협박 등의 행위를 하거나, 증거 수집이나 수색 등의 행위를 방해한 자는 약식기소의 경우 성문규정상의 벌금³⁵⁾이나 3개월 이하의 징역(병과 가능), 정식기소의 경우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음(병과 가능).

32) VATA 1994, s. 72(10)

33) 제5단계의 벌금(level 5 on the standard scale): standard scale은 입법을 통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재 5단계의 벌금은 5천파운드이다.

34) CEMA 1979, ss. 15, 16

35) 현재 성문규정상의 벌금은 2천 5백파운드이다.

〈표 III-3〉 영국의 조세범 유형 및 제재

위반행위	제재
허위신고(Perjury Act 1911, s. 5(b))	2년 이하의 징역
절도죄(Theft Act 1968, s. 1, 17)	7년 이하의 징역
위조죄(Forgery and Counterfeiting Act 1981, s. 1, 3)	약식기소의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병과 가능), 정식기소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소득세 포탈죄(FA 2000, s. 144)	약식기소의 경우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0파운드 미만의 벌금이 부과(병과 가능), 정식기소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무제한)이 부과(병과 가능).
세액공제를 통한 조세포탈죄(TCA 2002, s. 35)	정식기소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약식기소의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부가가치세 포탈죄(VATA 1994, s. 72(1)(2)(9))	약식기소의 경우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위반한 벌금의 3배와 최고벌금액 중 높은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병과 가능). 정식기소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병과 가능)
허위문서 제출 혹은 허위진술(VATA 1994, s. 72(3)-(7)(9))	약식기소의 경우 성문의 최고금액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미만의 징역 (병과 가능). 정식기소의 경우 벌금이나 7년 이하 징역(병과 가능)
조세회피행위의 인지(VATA 1994, s. 72(10))	제5단계의 벌금과 회피된 부가가치세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벌금부과
뇌물죄(CEMA 1979)	5천파운드의 벌금
공무원의 업무방해죄(CEMA 1979)	약식기소의 경우 성문규정상의 벌금 ¹⁾ 이나 3개월 이하의 징역(병과 가능), 정식기소의 경우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

주: 1) 현재 성문규정상의 벌금은 2천 5백파운드이다.

3. 일 본

가. 개관

□ 세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유형

- 일본은 세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위해 행정제재수단인 가산세³⁶⁾ 및

36) 일본 조세제도에는 가산세와 같은 금전적 부담으로서 연체세와 이자세가 있는데, 이들은 세법상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행정상 제재수단이라기보다 지연배상의 일종이다. 연체세는 납부기한을 지나서 세금을 납부한 자와 납부기한 안에 성실하게 납부한 자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이자의 일종이며, 이자세는 연체세와 기본적인 성격이 유사하지만 납부기한 연장을 허가받은 납세

체납처분절차와 형사제재수단인 조세범처벌제도를 두고 있음.

- 가산세에 관한 규정은 개별 세법이 아닌 국세통칙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데, 과소신고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불납부가산세, 중가산세의 4종류가 있음.
- 가산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동시에 조세범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가산세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 세법상 의무위반행위 중에도 가별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유형은 조세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세범처벌에 적용되는 법률

- 조세범 처벌을 위한 하나의 통일된 법률이 존재하지 않음.
- 위반행위 및 형량은 개별 세법에서 규정하며 처벌절차는 국세범칙단속법으로 규율함.
-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개별 세법별로 ‘벌칙’장을 따로 두어 위반 유형 및 형량을 규정하고 있음.

□ 조세범처벌제도의 특성

- 동일한 유형의 범죄라 하더라도 직접세 또는 간접세인지에 따라 실체법 또는 절차법상 달리 취급됨.
 - 직접세 탈세법은 기수만을 처벌하는 반면, 간접세 탈세법은 미수, 예비까지 처벌함.
 - 직접세 사건은 통고처분제도가 인정되지 않지만, 간접세 사건은 통고처분제도가 운영되며 고발이 소송조건으로 되어 있음.

나. 내용

□ 조세포탈

- 위조 또는 그 밖의 부정행위에 의해 납부세액을 면하거나 환급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거나 양자를 병과함.

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만일 면탈한 세액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00만엔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면탈한 세액 또는 환급받은 세액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원천징수와 관련된 조세포탈은 그 처벌 정도를 완화하고 있는데, 위조 그 밖의 부정행위에 의해 원천징수해야 하는 소득세를 면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거나 양자를 병과함.
- 만일 면탈한 세액이 50만엔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면탈한 세액 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원천징수세액 부징수 · 불납부

-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거나 양자를 병과함.
-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조세포탈과 비교할 때 징역형은 동일하나 벌금형이 높음.
- 만일 면탈한 세액이 100만엔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면탈한 세액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않고 납부하지도 않은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함.
- 퇴직소득 수급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퇴직소득에 관계된 원천징수세액 을 면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거나 양자를 병과함.
- 위조 그 밖의 부정행위와 같은 포탈행위를 요하지 않음.
- 만일 면탈한 세액이 50만엔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면탈한 세액 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세무정보에 관한 비밀누설

- 세무조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종사했던 자가 그 사무에 관해 알 수 있었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함.

□ 미신고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세금신고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함.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위조 등 조작행위

- 개별 세법 규정상 요구되는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조하는 경우 또는 위조된 문서를 세무서 등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함.

□ 법인세 신고서 등에 대표자 등이 서명날인하지 않은 경우

- 대표자 등이 법인세 신고서 등에 서명날인하지 않거나 서명날인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함.

□ 체납처분의 집행 방해

-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납세자가 그 재산을 은폐 또는 저가로 처분하거나 그 재산에 관한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경우 및 동일한 목적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점유한 제3자가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거나 양자를 병과할 수 있음.
- 위의 행위와 관련하여 납세자 또는 그 재산을 점유한 제3자의 상대방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거나 양자를 병과할 수 있음.

□ 세무조사 방해

- 개별 세법의 질문검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허위답변을 하는 경우 또는 허위기재 또는 기록을 한 장부서류를 제시하는 경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함.
- 국세통칙법 규정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허위답변을 하는 경우 또는 세무조사를 방해하거나 허위기재 또는 기록을 한 장부서류를 제시하는 경우는 3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함.

- 개별세법상 주요 조세범죄의 유형 및 제재 정도는 〈표 III-4〉와 같음.

〈표 III-4〉 일본의 조세범 유형 및 제재

위반행위	제재
조세포탈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
원천징수의무 규정에 위반한 소득세포탈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 벌금
원천징수세액 부징수 · 불납부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 벌금
퇴직소득 관련 원천징수세액 미신고미납부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 벌금
무면허제조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체납처분면탈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 벌금
체납처분면탈죄(상대방)	2년 이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 벌금
미신고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 벌금
증빙서류 미제출 · 위조죄, 위조증빙서류 행사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 벌금
대표자 서명날인규정 위반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 벌금
세무조사방해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 벌금
세무정보에 관한 비밀누설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 벌금
기타 협력의무 위반(소비세법 §67, 주세법 §58)	20만엔 이하 벌금
기타 협력의무 위반(소비세법 §68, 주세법 §59, 국세징수법 §188, 조세특별조치법 §66의 4 12호, 조세특별조치법 §68의 3의 5 11호)	10만엔 이하 벌금
기타 협력의무 위반(주세법 §60)	5만엔 이하 벌금 또는 과료

4. 독일

가. 개관

- 세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유형

- 독일은 세법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행정제재인 가산세, 질서위반금(Bussgeld) 및 강제집행절차와 형사제재인 조세범처벌제도를 두고 있음.
- 가산세는 조세기본법상 신고불성실가산세³⁷⁾(Verspätungszuschlag)와 납부불

37) 조세기본법 §152

성실가산세³⁸⁾(Säumniszuschläge)의 두 종류를 두고 있음.

- 질서위반금³⁹⁾은 조세기본법 및 개별 세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데, 중과실에 의한 탈세, 조세위해행위, 원천징수불이행, 소비세위해행위, 수출입관세위해행위, 불법한 환급청구, 신분증 부정사용을 부과대상으로 함.

□ 조세범처벌에 적용되는 법률

- 조세범 유형과 처벌절차는 조세기본법(Abgabenordnung) 제8장에 규정되어 있으며, 2004년에 제정된 「비합법적 활동 및 조세포탈 수반행위에 대한 강력규제에 관한 법률(SchwarzArbG)」은 조세포탈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은닉행위를 처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⁴⁰⁾.
- 세법에 달리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형법(Strafgesetzbuch), 형사소송법 (Strafprozessordnung)이 적용됨.

□ 조세범처벌제도 특성

- 독일에서 조세범죄는 세법규정에 따라 형벌대상으로 하는 행위, 명령위반행위, 혀위세금계산, 이러한 행위로 인해 누군가를 유리하게 하는 행위라 정의(AO §369①)하고 있지만, 조세포탈죄를 위주로 처벌하고 있음⁴¹⁾.
- 독일형법상 벌금형제도는 일수벌금형체계를 채택함에 따라 법률에 벌금의 상한이나 하한을 설정하지 않고 법원징수규칙(JBeitrO)에 따라 법원이 벌금일수와 1일 벌금액수를 확정하여 산출하게 됨⁴²⁾.

38) 조세기본법 §240

39) 독일은 질서위반법(Ordnungswidrigkeitengesetz)의 제정과 함께 과거 형법상 경미한 범죄를 구성하던 것이 비범죄화되었는데, 질서위반금은 이러한 경미한 범죄에 부과되는 것으로 유책성을 요하며 시효규정을 적용받는 점에서 행정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와 구별된다.

40) Lars P.Feld 외 2인, 『Tax Evasion, Black Activities and Deterrence in Germany』, IIPF, 2007, p. 19.

41) 신고의무, 기장의무 등 각종 협력의무위반은 질서위반금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42) 김영진, 「재산형 집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p. 100.

나. 내용

조세포탈(Steuerhinterziehung)

- 다음의 유형에 대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벌금으로 처벌함⁴³⁾.
 - 과세관청에 조세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또는 불완전하게 신고하여 조세부담을 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경우
 -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무지로 조세에 관한 중요한 사실에 대해 의무위반하게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경우
 - 납세표식 또는 납세증의 사용을 중단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경우
- 다음의 유형은 최소 6개월 이상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함⁴⁴⁾.
 - 과도한 이기심에서 상당한 금액의 조세를 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나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
 - 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공무원의 자격이나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
 - 위조되거나 변조된 증거를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조세를 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경우

영업적 · 조직적 조세포탈(Gewerbsmässige oder bandenmässige Steuer-hinterziehung)

- 조세포탈행위를 영업으로 하거나 단체의 구성원으로 계속적인 조세포탈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최소 1년 이상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함⁴⁵⁾.
 -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 3개월 이상 최대 5년 이하 징역형으로 그 형량이 완화될 수 있음.

43) 조세기본법 §370①

44) 조세기본법 §370③

45) 조세기본법 §370a

□ 금지위반(Bannbruch)

- 법률상 반입·반출·통관이 금지된 물건을 수입·수출·통관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으로 처벌함⁴⁶⁾.

□ 영업적·폭력적·조직적 밀수(Gewerbsmässiger, gewaltsamer und bandenmässiger Schmuggel)

- 다음의 경우 3개월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함⁴⁷⁾.

- 영업적으로 수입수출세를 포탈하거나 영업적으로 독점금지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 총기류를 이용하여 수입수출세를 포탈하거나 명령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 무기 또는 유사한 수단을 이용하여 수입수출세를 포탈하거나 명령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 수입수출세의 포탈이나 명령위반행위를 실행하기 위해 조직의 구성원으로 관련된 경우

□ 조세은닉(Steuerhehlerei)

- 부가가치세나 수입수출세를 포탈한 물품 또는 금지위반으로 반입된 물건을 매수 기타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거나 또는 이러한 행위를 보조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벌금으로 처벌함⁴⁸⁾.

- 직업적으로 동 행위를 하는 경우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가중함.

□ 이상에서 살펴본 조세기본법상 주요 조세범죄의 유형과 제재 정도는 <표 III-5>와 같음.

46) 조세기본법 §372①

47) 조세기본법 §373

48) 조세기본법 §374

〈표 III-5〉 독일의 조세범 유형 및 제재

위반행위		제재
조세포탈	일반적인 경우	별금 또는 5년 이하 징역
	공무원의 자격 남용 또는 위조와 결합	6개월 이상 10년 이하 징역
	영업적·조직적으로 행해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수출입관련 금지 위반		별금 또는 5년 이하 징역
조직적인 밀수행위		3개월 이상 5년 이하 징역
조세은닉	일반적인 경우	별금 또는 5년 이하 징역
	영업적으로 행해진 경우	3개월 이상 5년 이하 징역

5. 호 주

가. 개관

세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유형

- 세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유형은 행정상 제재수단인 가산세(administrative penalty), 강제집행절차와 형사 제재수단인 형벌로 구분됨.
- 호주의 가산세는 통일가산세체계(UAP)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데, 과소신고가산세, 무신고가산세, 기타 가산세의 세 분류로 크게 구분됨⁴⁹⁾.

조세범처벌에 적용되는 법률

- 조세포탈과 같이 국가의 조세채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는 형법(Criminal Code Act 1995 또는 Crimes Act 1914)상 규정에 따라 규율하는 반면, 조세채권에 간접적 침해를 줄 수 있는 행위 즉, 세법상 각종 규정 위반행위는 조세관리법(Taxation Administration Act 1953)에 규정되어 있음.
- 소득세 납세요건을 충족하지만 실제 납세능력이 없는 도관(회사 또는 신탁기구)

49) Woellner 외 3인, *Australian Taxation Law*, CCH, 2001, p. 1723.

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참가, 원조하는 행위는 1980년 형법(Crimes (Taxation Offences) Act 1980)이 규율함.

□ 호주의 조세범처벌제도 특성

- 우리나라 형법에는 국가재정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호주 형법은 국가재정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포탈은 형법에 의해 처벌됨.
- 호주의 형사제재는 반복되는 행위에 대해 가중적인 처벌제도를 두어 일회성으로 죄를 지은 자와 상습범 간에 차등을 두고 있음.
- 또한 개인과 기업을 구분하여 기업에 대한 최고벌금은 개인에 부과되는 최고벌금의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일단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동일한 행위에 대한 행정상 가산세는 면제됨.⁵⁰⁾

□ 조세포탈의 개념⁵¹⁾

- 조세포탈(Tax Fraud)은 ‘외부자에 의한 조세포탈’(External Fraud)과 ‘내부자에 의한 조세포탈’(Internal Fraud)로 구분하여 취급함.
- 일반적인 사기의 개념은 ‘부정하게 기망 또는 기타 수단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뜻함.
- ‘외부자에 의한 조세포탈’⁵²⁾은 세무공무원을 제외하고 납세자, 계획적인 조장자에 의해 일어나는 포탈행위로 정의내릴 수 있는데,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음.
 - 세금신고서상 항목(특히, 소득)을 부당하게 누락하는 경우
 - 발생하지 않은 공제, 비용, 환급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받을 자격이 없는 공제, 비용, 환급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경우

50) 조세관리법 §8ZE

51) ATO, Corporate Management Practice Statement Fraud Control and the Prosecution Process, 2007(출처: <http://www.ato.gov.au/>)

52) External Fraud: fraud committed by a taxpayer, scheme promoter or another person other than a Tax Office employee.

- 노령연금을 추가적으로 받기 위해 부정확한 개인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과
같이 부당하게 세무서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 정확하지 않은 신고서나 서면
을 제출하는 경우
 - 부당하게 노령연금 혜택을 받는 경우
 - 부당하게 유류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환급청구를 위해 부당하게 허위의 세금납부증을 만드는 경우
 - 소비세 용도로 원재료 구입을 적게 기재하는 경우
 - 부당하게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소득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
과 같이 부당하게 세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세금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부당하게 지속적인 지급불능상태를 이용하는 경우
 - 취득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한, 고의적인, 체계적인 이득의 취득
 - 미수, 예비, 공모를 포함하여 기타 위에 언급된 경우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행
위를 하는 경우
- ‘내부자에 의한 조세포탈’⁵³⁾은 세무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저지르는 포탈행위를
말하는데,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음.
- 승인 없이 세무정보에 접근하는 경우
 - 국유재산, 사유재산, 각종 재산권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 작은 액수의 현금을 훔치는 경우
 - 세무서시스템이나 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이익을 얻기 위해 세무서의 프로세스나 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조작
하는 경우
 - 인가없이 개인적 용도를 위해 세무서에 속한 재산을 가져오는 행위

조세범 현황

- 호주 국세청은 탈세(tax evasion)로 의심되는 사건을 신고하는 시스템을 운영하

53) Internal Fraud: fraud committed by a Tax Office employee directly against the Tax Office. This includes fraud against the revenue system or departmental funds by Tax Office employees.

고 있는데, 2005년 하반기 동안 신고된 사건 중 대표적인 유형으로 소득세 원천징수액 부정수 또는 불납부, 사업소득 미신고, 소득세 신고서 미제출, 비영리소득 미신고를 들 수 있음.

- 조세포탈(tax fraud)로 별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사건 중 일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는데, 공표된 자료에 의하면 주로 세금신고서 또는 각종 증빙서류의 조작행위를 수반한 탈세 또는 탈세 시도를 주로 처벌하고 있음.

나. 내용

1) 조세관리법상 범죄유형

- 세법상 각종 협력의무에 대한 불성실
 - 세법 등에 규정된 정보제공의무, 일반적인 자료제출의무, 고지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1회 위반시 2,200달러 이하 별금, 2회 위반시 4,400달러 이하 별금, 3회 이상 위반시 자연인은 5,500달러 이하 별금 또는 12개월 이하의 징역(병과 가능)으로 한편 법인은 27,500달러 이하 별금으로 처벌하게 됨.
- 법원의 명령에 대한 불이행
 - 증거제출 또는 신고서 ·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연인은 5,500달러 이하 별금 또는 12개월 이하의 징역(병과 가능)으로 한편 법인은 27,500달러 이하 별금으로 처벌하게 됨.
- 허위진술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
 - 세무공무원에 대해 허위진술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거나 어떠한 사항을 언급하지 않음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이 되는 경우, 1회 위반시 2,200달러 이하 별금, 2회 위반시 4,400달러 이하 별금으로 처벌하게 됨.
 - 무모하게(recklessly)⁵⁴⁾ 이러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처벌수준이 가중되는데, 일

54) 호주 형법상 ‘reckless’는 범죄의 성립요건에서 주관적 요소(fault element) 중의 하나이다.

반적으로 3,300달러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고 과거에 위반행위가 1회 있었던 경우 5,500달러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음.

□ 회계장부 · 증빙서류 등의 허위기록 또는 위조 · 은닉

- 회계장부 또는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거나 위조 · 은닉하는 등 세무정보를 조작할 경우 처벌대상이 됨.
-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기록 · 보존의무자가 이러한 위반행위를 하게 되면 1회 위반시 2,200달러 이하의 벌금, 2회 위반시 4,400달러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고, 무모하게(recklessly) 이러한 위반행위를 하였다면 1회 위반시 3,300달러 이하의 벌금, 2회 위반시 5,500달러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됨.
-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기록 · 보존의무자가 아닌 자라도 세무행정을 방해할 의도로 이러한 위반행위를 할 경우에는 1회 위반시 5,5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2개월 이하의 징역형으로, 2회 위반시 11,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병과 가능)으로 세무정보 기록 관련 위반행위 중 가장 중하게 처벌함.

□ 신원조작, 세금신고번호(tax file number) 오용, 세무정보 누설

- 세무행정을 방해할 의도로 특정한자의 신원, 거주지, 사업장 주소를 조작하는 경우 1회 위반시 5,5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2개월 이하의 징역형으로, 2회 위반시 11,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병과 가능)으로 중하게 처벌함.
- 특정한자의 세금신고번호를 다른 사람의 자료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세금신고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11,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병과 가능)으로 처벌함.
- 세법 규정상 권한없이 제3자의 세무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직 · 간접적으로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11,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병과 가능)으로 처벌하게 됨.

2) 형법상 범죄유형

- 기망에 의해 국가로부터 재산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
 - 호주 형법에는 정부의 적정한 행정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조세포탈은 이러한 형법상 규정에 따라 처벌됨.
 - 기망(deception)에 의해 국가로부터 재산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에 참여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자는 12개월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음.

- 세무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 공무중인 세무공무원의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음.

3) 요약

- 조세관리법 및 형법상 주요 조세범죄의 유형 및 제재 정도는 <표 III-6>과 같음.

<표 III-6> 호주의 조세범 유형 및 제재

위반행위	최 고 형	
	자연인	기 업
세법상 신고서 또는 정보 제공, 자료제출, 질문답변, 증거제출을 요구하는 세법규정 거부 또는 불이행	1회 위반: \$2,200 벌금 2회 위반: \$4,400 벌금 3회 이상: \$5,500 벌금, 12개월 징역형(and/or) 법원은 위의 형벌 이외에도 회피금액의 최대 2배 금액을 국세청장에게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1회 위반: \$2,200 벌금 2회 위반: \$4,400 벌금 3회 이상: \$27,500 벌금
증거제출 또는 신고서 ·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법원명령 거부 또는 불이행	\$5,500 벌금, 12개월 징역(and/or) 법원은 위의 형벌 이외에도 회피금액의 최대 2배 금액을 국세청장에게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27,500 벌금

〈표 III-6〉의 계속

위반행위	최 고 형	
	자연인	기 업
허위신고서 작성 또는 중요부분의 생략, 부실장부 작성	1회 위반: \$2,200 별금 2회 이상: \$4,400 별금 법원은 위의 형벌 이외에도 회피금액의 최대 2배 금액을 국세청장에게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1회 위반: \$2,200 별금 2회 이상: \$4,400 별금
무모한 허위신고서 작성 또는 중요부분의 생략, 무모한 부실장부 작성	1회 위반: \$3,300 별금 2회 이상: \$5,500 별금, 12개월 징역형(and/or) 법원은 위의 형벌 이외에도 회피금액의 최대 2배 금액(2회 이상 위반시 회피금액의 3배까지)을 국세청장에게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1회 위반: \$3,300 별금 2회 이상: \$27,500 별금
기망 또는 방해할 의도를 가지고 장부 위조 · 은닉 · 파괴 · 변경하는 행위, 기망 또는 방해할 의도를 가지고 신분 또는 주소를 위조 · 은닉하는 행위	1회 위반: \$5,500 별금, 12개월 징역(and/or) 2회 이상: \$11,000 별금, 2년 징역형(and/or) 법원은 위의 형벌 이외에도 회피금액의 최대 2배 금액(2회 이상 위반시 회피금액의 3배까지)을 국세청장에게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조세관리법 §8W)	1회 위반: \$27,500 별금 2회 이상: \$55,000 별금
허가없이 세금기록을 이용하는 행위, 허가없이 세금정보를 기록하거나 또는 누설하는 행위	\$11,000 별금, 2년 징역형(and/or)	\$55,000 별금
허가없는 세금신고번호를 취득하는 행위, 허가없는 세금신고번호의 이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세금신고번호 이용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	\$11,000 별금, 2년 징역형(and/or)	\$55,000 별금
국세청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13,200 별금, 2년 징역형(and/or)	\$66,000 별금
기망에 의해 국가로부터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10년 징역형	
재산상 이익을 가질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 국가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에 가담	12개월 징역형	

자료: CCH, *Australian master tax guide*, 2007

6. 캐나다⁵⁵⁾

가. 개관

세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유형

- 세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유형은 행정상 제재수단인 가산세(civil penalty), 강제집행절차와 형사 제재수단인 형벌로 구분됨.
- 가산세는 개별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신고불성실가산세(소득세법 §162①②, 163①), 증가산세(소득세법 §163②) 등이 있음.

조세범처벌에 적용되는 법률

- 캐나다는 조세범처벌에 관한 독자적인 법률을 두지 않고, 개별 세법에 조세범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연방세⁵⁶⁾의 중심을 이루는 소득세법(Income Tax Act)과 소비세법(Excise Tax Act)에 몇 가지 세법 위반행위에 대한 가산세 또는 형벌규정을 두고 있음.

조세범처벌 특성

- 동일한 행위에 조세범처벌규정과 가산세규정이 동시에 해당될 때, 양자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가산세규정을 배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조세범처벌규정에 명시하고 있음.
- 정액형 벌금 이외에도 위반금액에 비례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배수형 벌금제도를 함께 운영하는데, 배수형 벌금제도의 상한은 위반금액의 약 2배에서 형성됨.

55) 캐나다의 소득세법과 소비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56) 연방세에는 소득세,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세(capital tax)가 속하며, 지방세에는 소득세, 소매판매세, 토지양도세, 특정물품에 대한 판매세, 기업에 대한 자본세, 재산세가 속한다. 소득세는 연방과 지방이 각각 징수할 수 있는데, 연방과 지방은 조세분담에 관한 협정을 맺어서 납세자의 부담을 적정수준에서 유지하도록 한다(IBFD자료 Canada-Taxation&Investment 참조, <http://online2.ibfd.org/ca/>).

□ 조세범 현황

- 캐나다 국세청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media room’ → ‘convictions’ 난에서 18개 주의 최근 5개월 동안 발생한 대표적인 조세범죄를 구체적 사실관계와 범죄사실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음.
- 2007년 7월에서 11월까지 Alberta주에서 공표된 사건은 6건으로 모두 허위신고, 미신고행위 등과 결합한 조세포탈로 구성됨.

나. 내용

1) 소비세법상 범죄유형

□ 조세포탈

- 일반소비세에 대한 세금을 포탈하거나 무효로 하기 위해 시도하는 경우, 1만 2천 달러 이하 벌금 또는 12개월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하거나 양자를 함께 병과할 수 있음.
- 재화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에 대한 세금을 포탈하거나 부당환급받은 경우 포탈세액의 50% 이상 200% 이하의 벌금 또는 포탈세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1천달러 이상 2만 5천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러한 벌금과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병과할 수 있음.
 - 만일 Attorney General of Canada가 정식기소한 사건인 경우라면 벌금액은 포탈세액의 100% 이상 200% 이하 또는 포탈세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2천 달러 이상 2만 5천달러 이하로, 징역형은 5년 이하로 가중처벌됨.

□ 세금신고서 관련 범죄

- 세금을 신고해야 할 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달러 이상 1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재화용역세에 대한 세금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 달러 이상 2만 5천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그러한 벌금과 12개월 이하의 징역형으

로 처벌할 수 있음.

- 세금신고서에 허위 또는 기망의 내용을 작성하거나 그러한 작성행위에 동의·묵인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배에 100달러 이상 1천달러 이하를 더한 금액으로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고,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2개월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음.

□ 회계장부, 증빙서류 관련 범죄

- 회계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보존해야 하는 자가 그러한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 25달러 이상 1천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러한 벌금을 내지 않으면 2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음.
- 세금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회계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훼손하거나 회계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허위의 내용을 기입하는 경우, 납부하거나 징수해야 할 세액 또는 첨부 또는 취소해야 하는 인지대의 2배에 100달러 이상 1천달러 이하를 더한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고, 그러한 벌금을 내지 않으면 3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음.

□ 세금징수, 납부 위반범죄

- 일반소비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거나 징수하거나 인지를 붙이거나 취소해야 하는 자가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해야 할 세금 또는 첨부 또는 취소해야 하는 인지대에 최소 25달러에서 최대 1천달러를 더한 벌금을 부과하고, 위의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30일 이상 12개월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음.
- 고의로 재화용역세를 납부·징수·송금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징수·송금해야 하는 세액의 20%에 1천달러 이하를 합한 벌금으로 처벌하거나 그러한 벌금과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병과할 수 있음.

□ 세무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 폭행 등의 방식으로 세무공무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또는

그러한 시도에 대해 1천달러 이상 2만 5천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이러한 벌금과 12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음.

- 세무공무원 등이 회계장부 또는 중빙서류를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방해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경우, 200달러 이상 2천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양자를 함께 부과할 수 있음.

세무조사시 협력의무 위반범죄

- 정당한 사유없이 소비세법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세무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조사과정 중 제기된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경우, 20달러 이상 4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정보제공 관련 범죄

- 비공개자료를 제공하거나 특정 목적을 위해 비공개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천달러 이하 벌금 또는 12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를 함께 부과할 수 있음.

2) 소득세법상 범죄유형

조세포탈

- 세금신고서에 허위의 내용을 작성하거나 납세자의 회계장부 또는 중빙서류를 조작하여 소득세를 포탈하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받는 경우, 포탈하고자 했던 세액의 50% 이상 20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그러한 벌금과 2년 이하의 징역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음.

-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 Attorney General of Canada가 정식기소하여 유죄 판결받는 경우에는 포탈하려는 세액 또는 부당 환급 또는 공제받으려는 세액의 100% 이상 200%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함.

□ 세금신고서 관련 범죄

- 세금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1천 달러 이상 2만 5천 달러 이하 벌금을 부과하거나 그러한 벌금과 12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음.

□ 정보제공 관련 범죄

- 공무원이 개인이나 사업체의 동의없이 소득세법이 정한 목적 이외에 납세자정보나 사회보장번호, 사업자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천달러 이하 벌금 또는 12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를 함께 부과할 수 있음.
 - 그러한 정보를 제공받는 자도 동일하게 처벌됨.

3) 요약

- 소비세법 및 소득세법상 주요 조세범죄의 유형 및 제재 정도는 <표 III-7>과 같음.

<표 III-7> 캐나다의 조세범 유형 및 제재

위반행위	적용세목	제재	
		별금형	징역형
조세포탈	일반소비세	1만 2천달러 이하	12개월 이하
	재화용역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탈세액의 0.5배 이상 2배 이하의 벌금 (포탈세액이 불확실한 경우 1천달러 이상 2만 5천달러 이하) - 정식기소시 포탈세액의 1배 이상 2배 이하 (포탈세액이 불확실한 경우 2천달러 이상 2만 5천달러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이하 - 정식기소시 5년 이하
	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탈세액의 0.5배 이상 2배 이하 - 정식기소시 포탈세액의 1배 이상 2배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이하 - 정식기소시 5년 이하
미신고	일반소비세	10달러 이상 100달러 이하	없음
	재화용역세	1천달러 이상 2만 5천달러 이하	12개월 이하
	소득세		

〈표 III-7〉의 계속

위반행위	적용세목	제 재	
		별금형	징역형
허위신고	일반소비세	납부세액의 2배+100달러 이상 1천 달러 이하	12개월 이하(보충적)
장부보존의무위반	일반소비세	25달러 이상 1천달러 이하	2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보충적)
장부훼손	일반소비세	납부세액의 2배+100달러 이상 1천 달러 이하	3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보충적)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일반소비세	납부세액+25달러 이상 1천달러 이하	30일 이상 12개월 이하(보충적)
	재화용역세	납부세액의 20%+1천달러 이하	6개월 이하
세무공무원에 대한 장부조사방해	일반소비세	200달러 이상 2천달러 이하	6개월 이하
세무공무원에 대한 폭행 등	일반소비세	1천달러 이상 2만 5천달러 이하	12개월 이하
세무조사시 불응	일반소비세	20달러 이상 400달러 이하	없음
불법정보제공	일반소비세	5천달러 이하	12개월 이하
	소득세		

주: ‘보충적’으로 표기한 것은 별금형을 내지 않았을 때 징역형을 부과한다는 의미이며, 그 이외에는 따로 부과할 수도 있고 양자를 병과할 수도 있음.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1. 국제비교⁵⁷⁾

가. 조세법 입법형식

- 조세법처별 구조에 대한 입법 형식은 하나의 법률에 통합, 규율하는 통합입법형식과 개별 법률에 해당 처별규정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개별입법형식으로 나눌 수 있음.
 - 통합입법국가는 미국, 독일, 호주가 있으며, 개별입법형식 국가는 영국, 일본, 캐나다 등이 여기에 속함.
 - 우리나라는 조세법처별법에 통합하여 조세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통합입법국가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음.

〈표 IV-1〉 조세법 입법형식 비교

통합입법	개별세법 규정
한국(조세법처별법)	영국(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관세법 등)
미국(연방세법IRC 제75장)	일본(소득세법, 법인세법, 소비세법, 상속세법 등)
독일(조세기본법)	캐나다(소득세법, 소비세법 등)
호주(조세관리법)	

57) 이하 국제비교는 각국의 조세법과 기본형법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므로, 조사되지 않은 특별법 규정에 의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나. 조세범 현황 공표

- 각국의 국세청은 조세범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세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조세범 현황을 공표하고 있음.
- 조세범 현황 공표 정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세통계연보』에 ‘조세범칙 조사실적’과 ‘조세범 고발실적’만 공개하여 기소 사건 수나 유죄판결이 난 사건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음.
- 반면 일본은 조사 사건 수, 기소 사건 수부터 유죄판결이 난 사건 수를 공개하고 있으며 미국, 호주, 캐나다는 대표적인 사건이나 각 주별로 발생한 개별사건의 간단한 개요와 처벌수준을 공개하고 있음.

〈표 IV-2〉 개별 조세범죄 공표 여부

개별사건 공표	개별사건 비공표
미국, 호주, 캐나다	한국, 일본

다. 조세범 유형⁵⁸⁾

- 조세범은 국가의 부과징수권을 직접 침해하여 조세수입의 감손을 초래하거나 이를 기도하는 내용의 행위인 탈세범과 직접 조세수입의 감손을 초래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조세질서의 확보를 위해 설정한 세법상의 각종 의무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조세부과징수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인 위해범으로 구분됨.

1) 탈세범

- 조세포탈죄는 모든 국가에서 규정하는 대표적인 조세범죄이며, 원천징수세액을

58) 이철송, 『조세범처벌법의 개편방향』의 분류를 참고했다.

징수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유형에 대해 우리나라, 미국,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 무면허주류의 제조/판매행위에 대한 처벌은 주류제조·판매에 대한 관리권한을 세무당국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일본만 조세법규정에 두고 있으며, 다른 나라는 조세법 이외의 법률에 동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는 우리나라의 경우 3회 이상 체납시 체납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소비세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 체납처분을 면탈하려는 행위 또는 그러한 행위를 돋는 행위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조세법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2) 위해범

- 세금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 세무관련서류를 조작하거나 소득금액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는 독일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 세무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공무원의 세무정보 누설은 모든 국가에서 조세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조세법에 따로 규정이 없으나 형법상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
- 조세납부를 방해하는 행위는 우리나라만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밖의 처벌유형은 개별 국가의 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임.

〈표 IV-3〉 주요 조세범죄 유형비교

분류	유 형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호주	캐나다
탈세 범	조세포탈	O	O	O	O	O	O*	O
	무면허주류 제조/판매	O	.	.	O	.	.	.
	체납	O	O
	체납처분 면탈/방조	O	.	.	O	.	.	.
	원천징수세액 부정수/불납부	O	O	.	O	.	.	.
위 해 범	세무관련서류 미보관/훼손등	O	O	O
	세무관련서류 미신고/ 미제출	O	O	.	O	.	O	O
	세무관련서류 조작/허위신고	O	O	O	O	.	O	O
	일반인에 대한 조세납부 방해	O
	세무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O*	O	O	O	.	O*	O
	세무정보 누설	O*	O	.	O	.	O	O
	납세자정보 불법사용	O	O

- 주: 1. '*' 된 부분은 형법 규정에 따라 처벌가능한 유형임.
 2. 각국의 세법 규정상 조세범죄를 위주로 작성하였으며, 한국, 미국, 호주는 형법상 범죄를 반영하였음.
 3. 나라마다 처벌대상이 되는 장부, 세금계산서, 세금신고서, 진술서 등 세무관련서류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이하에서는 '세무관련서류'라 통칭함.

라. 주요 조세범죄 처벌수준⁵⁹⁾

- 위에서 나타난 주요 조세범죄 중 공통유형을 가진 나라가 3개국 이상인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비교됨.

59) 이하는 2007년 12월 20일자 환율(매매기준율)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미국 939.70원, 영국 1,876.63원, 일본(100엔) 828.92원, 유럽연합 1,351.43원, 호주 806.73원, 캐나다 937.31원)

1) 조세포탈

- 징역형의 상한선은 짧게는 2년에서부터 길게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호주의 경우 벌금형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이 특징임.
- 벌금형을 원화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일본 약 4,145만원(500만엔)이하, 미국 약 9,397만원(10만달러)이하, 영국의 약식기소시 약 938만원(5천파운드)이하로 됨.

〈표 IV-4〉 조세포탈행위 처벌수준 비교

국가	벌금형		징역형	
한국	원칙	세액의 3배 이하	원칙	3년 이하
	포탈세액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세액 2~5배 이하	포탈세액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3년 이상
	포탈세액 10억원 이상	세액 2~5배	포탈세액 10억원 이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일본	500만엔 이하		5년 이하의 징역	
독일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미국	10만달러 이하		5년 이하의 징역	
영국	약식기소	5천파운드 이하	약식기소	6개월 이하 징역
	정식기소	무제한	정식기소	7년 이하의 징역
호주	없음		10년 이하의 징역	
캐나다	세액 0.5배~세액 2배		2년 이하의 징역	

2) 원천징수세액 불납부

- 벌금형의 경우 일본은 약 829만원(100만엔) 이하, 미국은 약 940만원(1만달러) 이하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징역형의 경우 일본은 3년 이하, 미국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음.

〈표 IV-5〉 원천징수세액 불납부의 처벌수준 비교

국가	별금형		징역형	
한국	미납세액 상당		1년 이하	
일본	일반	100만엔 이하	일반	3년 이하
	퇴직소득	50만엔 이하	퇴직소득	1년 이하
미국	1만달러 이하		5년 이하	

3) 세무관련서류 미보관·훼손 등

- 징역형을 비교하면 1회 위반시 우리나라는 2년 이하인 데 반해, 호주와 캐나다는 모두 1년 이하임.
- 별금형을 원화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호주 1회 위반 약 444만원(5,500달러), 2회 이상 약 887만원(11,000달러), 캐나다 약 9만원(100달러)+위반금액의 2배에서 약 94만원(1,000달러)+위반금액의 2배로 환산 가능.

〈표 IV-6〉 세무관련서류 미보관·훼손 등에 대한 처벌수준 비교

국가	별금형		징역형	
한국	500만원 이하		2년 이하	
호주	1회 위반	5,500달러 이하 (법인: 27,500달러)	1회 위반	12개월
	2회 이상	11,000달러 이하 (법인: 55,000달러)	2회 이상	2년 이하
캐나다	(100달러+위반금액의 2배)~ (1,000달러+위반금액의 2배)		3~12개월	

4) 세무관련서류 미신고 · 미제출

- 징역형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만 징역형으로 처벌하지 않고 미국, 일본은 세목이나 위반횟수에 상관없이 1년 이하로 동일하며, 호주는 위반횟수에 따라, 캐나다는 재화용역세와 소득세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음.
- 개인에 대한 벌금형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50만원 이하인 반면, 미국은 약 2,347만원(2만 5천달러) 이하, 일본은 약 166만원(20만엔) 이하, 호주는 약 177만 원~444만원(2,200달러~5,500달러) 이하, 캐나다는 약 9천원~2,343만원(10 달러~2만 5천달러)으로 설정되어 있어, 세무관련서류 미신고 · 미제출에 대한 처벌 수준은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수준임.

〈표 IV-7〉 세무관련서류 미신고 · 미제출에 대한 처벌수준 비교

국가	벌금형		징역형	
한국	50만원 이하		없음	
미국	2만 5천달러 이하(법인: 10만달러)		1년 이하	
일본	20만엔 이하		1년 이하	
호주	1회 위반	2,200달러 이하(법인: 동일)	1회 위반	없음
	2회 위반	4,400달러 이하(법인: 동일)	2회 위반	없음
	3회 이상	5,500달러 이하(법인 27,500달러)	3회 이상	12개월 이하
캐나다	일반소비세	10달러 이상 100달러 이하	없음	
	재화용역세	1천달러 이상 2만 5천달러 이하	12개월 이하	
	소득세			

5) 세무관련서류 조작 · 허위신고

- 징역형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허위신고의 유형에 따라 징역형이 없는 경우에 서부터 최고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고 있는 데 반해, 다른 국가들은 최고

3년 이하의 징역형에 머무르고 있으며 세무관련서류를 구분하거나 허위신고의 유형을 다양하게 나누지는 않고 있음.

- 개인에 대한 벌금형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정액형은 50만원~500만원 이하, 배수형은 산출세액의 2배~5배 이하로 설정되어 있는 반면, 미국은 약 940만 원~9,397만원(1만달러~10만달러) 이하, 일본은 약 166만원(20만엔) 이하, 호주는 약 177만원~444만원(2,200달러~5,500달러) 이하, 캐나다는 납부세액의 2배 + 약 9만원~94만원(100달러~1,000달러) 이하로 설정되어 있음.
- 정액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처벌수준은 호주와 비슷한데, 일본보다는 높고 미국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배수형을 취하고 있는 캐나다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납부세액의 5배까지 부과 할 수 있으므로 처벌수준이 매우 높음.

〈표 IV-8〉 세무관련서류 조작·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수준 비교

국가	벌금형		징역형
한국	세금계산서 허위기재	산출세액의 2배 이하	1년 이하
	원칙	산출세액의 2배 이하	3년 이하
	세금계산서 허위기재 (위장거래분)	공급가액 등 30억원 이상	1년 이상
		공급가액 등 50억원 이상	3년 이상
	장부 및 증빙서류 소각 등	500만원 이하	2년 이하
	허위신고	50만원 이하	없음
미국	허위신고	10만달러 이하 (법인: 50만달러 이하)	3년 이하
	허위문서제출	1만달러 이하 (법인: 5만달러 이하)	1년 이하
영국	없음		2년 이하
일본	20만엔 이하		1년 이하
호주	1회 위반	2,200~3,300달러 이하(법인: 동일)	1회 위반
	2회 이상	4,400~5,500달러 이하 (법인: 4,400~27,500달러)	2회 위반
캐나다	납부세액의 2배+100달러 이상 1천달러 이하		12개월 이하

6) 세무공무원에 대한 업무집행방해죄

- 징역형의 경우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함. 우리나라의 경우는 징역형 규정이 없고, 벌금형도 50만원 이하로 처벌하고 있어서 비교적 가벼운 형으로 규정되어 있음
- 벌금형을 원화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미국 약 282만원(3천달러)이하, 호주 약 1,049만원(13,000달러)이하, 법인의 경우 약 5,324만원(66,000달러)이하, 캐나다의 경우 약 16만원(200달러)에서 약 161만원(2,000달러)이하로 환산됨.

〈표 IV-9〉 세무공무원에 대한 업무집행방해죄 처벌 비교

국가	벌금형	징역형
한국	50만원 이하	없음
미국	3,000달러 이하	1년 이하
호주	13,000달러 이하 (법인: 66,000달러 이하)	2년 이하
캐나다	200에서 2,000달러 이하	6개월 이하

7) 세무정보 누설행위

- 징역형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2년 이하로 호주와 동일한 수준인데, 미국은 5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 벌금형을 원화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일본의 경우 약 249만원(30만엔) 이하, 미국 약 470만원(5천달러) 이하, 영국 약 938만원(5천파운드), 호주 개인의 경우 약 887만원(11,000달러) 이하, 법인의 경우 약 4,437만원(55,000달러) 이하로 환산됨.

〈표 IV-10〉 세무정보관련 비밀 누설행위에 대한 처벌 비교

국가	벌금형	징역형
일본	30만엔 이하 벌금	2년 이하
미국	5천달러 이하	5년 이하
영국	5천파운드	없음
호주	11,000달러 이하(법인: 55,000달러 이하)	2년 이하

마. 구성요건 명확성의 측면

□ 허위신고죄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법에 의한 신고 또는 고지’라고만 되어 있어 문리해석상 어느 법에 의한 신고 또는 고지인지 알 수 없게 되어 있는 반면, 미국, 일본, 캐나다는 ‘몇 조에 의한’과 같은 근거조항을 설정하여 구성요건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있음.

〈표 IV-11〉 주요국의 허위신고죄 구성요건 비교

한국	법에 의한 신고 또는 고지에 있어서 고의로 이를 태만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를 한 자 (조세범처벌법 §13 2호)
미국	(6674조에 규정된 처벌을 제외하고) 법에 의한 여타의 처벌 대신, 605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자가 고의로 사위 또는 허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그러한 신고서 내지 진술서를 고의로 제시간에 제출하지 않거나 6051조에서 또는 그러한 조항에 규정된 법규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과세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IRC §7204)
영국	부가가치세상 목적을 위하여 허위로 문서를 작성, 제공, 송부 그 밖의 행위를 통한 허위행위를 한 경우, 혹은 간접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또는 부가가치세상 목적을 위하여 허위인 사실을 알고도 거짓정보를 제공한 경우(부가가치세법 §72)
일본	제112조 제1항(예정 납세액의 감액의 인정의 신청절차) (제166조(비거주자에 대한 준용)에 있어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한 신청서 또는 제112조 제2(제166조에 있어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항에 규정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고 세무서장의 인정을 받았던 자(소득세법 §242①)
호주	(1)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a) 세무공무원에게 진술을 한 자; 그리고 (b) 그러한 진술이 세부사항에서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조세관리법 §8K①)
캐나다	97. (2) 다음과 같은 때에 (a) 파트 I 을 제외한 모든 파트에 따라 세금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또는 (b) 소비세법 §68, §70에 따라 신청된 경우 신고서나 신청서에 허위 또는 기망의 내용을 작성하거나 그러한 작성행위에 동의 · 묵인하는 경우(소비세법 §97②)

바. 기타

1) 개인과 법인 간의 형량차등 여부

- 우리나라, 일본, 독일 및 캐나다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조세법에 대한 별금형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미국 및 호주는 법인과 개인의 별금부담능력 차이를 감안하여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의 경우 별금형을 독자적으로 정함.
- 미국은 법인이 조세포탈, 허위신고, 허위문서제출에 개입된 경우 개인에 비해 5배에 해당하는 별금형을 상한으로 설정하고, 호주도 2회 또는 3회 이상 무신고, 무모한 허위신고, 장부훼손의 경우 법인은 개인의 5배에 달하는 별금형을 상한으로 규정함.

〈표 IV-12〉 개인과 법인간의 형량차등 여부 비교

개인과 법인을 다르게 처벌	개인과 법인을 동일하게 처벌
미국, 호주	한국, 일본, 독일, 캐나다

2) 형법이론 적용배제

- 조세법의 기본 성격은 반사회성이 있는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해 형사상 제재를 가하는 형사법이기 때문에, 통합입법 또는 개별 세법에 규정된 구성요건, 법정형 이외의 위법성, 책임, 양형에 관한 해석은 형법규정을 따르고 있음.
- 현재 조사한 국가들의 법률규정과 법률이론에 근거하여 볼 때, 조세범죄를 일반 형사범죄와 차등을 두어 형법 적용배제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만 해당됨.

〈표 IV-13〉 형법이론 적용배제 여부

형법 적용배제규정 있는 국가	형법 적용배제규정 없는 국가
한국	미국, 독일, 일본, 호주, 캐나다

2. 시사점

가. 처벌 유형의 정비

- 처벌 유형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조세범죄 중 가장 중요한 범죄로 손꼽히는 조세포탈을 비롯하여 원천징수의무 위반, 신고의무 위반, 장부기장 및 증빙서류 제출의무 위반 등 처벌 유형은 나라간 유사점이 많음.
- 국세청 공무원 등이 세무 관련 정보를 누설한 경우 처벌규정에 있어서는 미국, 일본, 호주에는 따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됨.
- 주요국은 포탈행위가 개입되지 않은 납부의무 불이행은 가산세나 체납처분과 같은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제재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데 반해, 우리나라만 유독 3회 이상 체납을 조세범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지방세 체납에만 적용되고 국세체납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조세체납죄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됨.
- 세무 관련 각종 증빙서류 신고 및 제출의무위반에 대해 주요국은 증빙서류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위반행위로 처벌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를 별도로 구분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며 다른 증빙서류 신고 및 제출의무위반 행위는 다소 소홀히 다루고 있으므로 증빙서류 관련 범죄에 대한 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조세 신고 및 납부를 선동, 교사, 폭행, 협박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자를 특별히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주요국의 입법례에서 찾아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실무상 적용례가 없으므로 처벌 유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 신고 및 제출의무 외에 기타 세법상 각종 협력의무위반행위는 가급적 행정적 제재로 처리하고 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는 일부 유형만 조세범으로 규정하는 추세로서, 우리나라의 명령사항위반 등의 규정은 처벌 유형과 처벌 수준을 대폭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음.

나. 적정한 형량수준 설정

- 조세범죄에 대해 어떠한 형별수단을 채택하고, 어느 수준으로 처벌할 것인가는 국가별로 차이가 나지만, 동일 또는 유사한 조세범죄에 대한 기본적 접근방법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조세범죄가 전개된 나라들의 입법례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발견하거나 적절한 형량수준을 결정하는 것임.
- 조세포탈죄의 경우 징역형의 상한이 호주는 10년 이하, 일본, 독일, 미국, 캐나다는 상한이 5년 이하인 반면 우리나라는 징역형의 상한이 3년 이하로 낮음. 그러나 실제 특가법상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이면 징역형 하한이 3년 이상이 되고 심지어는 무기징역에 이를 수 있는 점에서 형별수준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음.
- 무신고 또는 혜위신고와 관련하여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혼용하여 다소 비중 있는 범죄로 다루는 데 반해, 신고납세주의가 확립된 지 10여 년 가까이 되었는데도 조세범처벌법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나라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 주요국과 편차가 크다고 하겠음.

- 세무 관련 증빙서류 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주요국은 증빙서류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규정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하는 반면 다른 증빙서류에 관한 범죄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 증빙서류의 종류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지게 됨.
- 벌금형의 부과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나라가 기본적으로 ‘5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이 정액형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형벌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액형과 다른 방식을 혼용하기도 하므로 이를 참고할 수 있음.
 - ‘위반금액의 몇 배’와 같은 배수형 방식을 취하는 방식(한국, 캐나다)
 - 위반금액이 정액형 상한을 넘으면 초과금액만큼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방식(일본)
 - 위반횟수에 따라 벌금 상한선에 차등을 두는 방식(호주)
- 대부분의 국가가 정액형 벌금을 기본으로 하며, 배수형 방식을 취하더라도 일부 유형의 벌금형에 대해 최고 위반금액의 2배까지만 규정하여 벌금형이 지나치게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조세포탈죄와 위조세금계산서범죄의 경우 최고 5배까지 부과하도록 하여 벌금형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구성요건의 명확성 개선

- 법원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의 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청에 배치되는 것은 아님⁶⁰⁾.
-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조세포탈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체납죄의 ‘정당한 사유’ 등은 다른 형벌법규상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표현이며 법원의 보충적인 해석

60)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판결

을 필요로 하는 개념으로 명확성의 요청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짐.

- 그러나 입법자로서는 해당 형별법규가 명확성의 요청에 배치되지 않는 데 안주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하여 법률해석상 논쟁을 최소화하고 일반국민들이 쉽게 인지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예방효과를 높이는 것이 국가 전체에 이익을 가져옴.
-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의 경우 세법상 협력의무 위반행위를 처벌할 때 협력의무를 요구하는 개별 세법규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법률규정이 다소 길어 지더라도 위반행위의 내용을 가급적 자세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음.
(부록 참조)
- 영미법계 국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제와 유사한 일본도 기타 세법상 의무위반행위를 매우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 조세범처벌법상 범죄구성요건의 명확성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음.

라. 법인과 개인의 차등있는 벌금형 상한 설정

- 전통적으로 형사상 책임은 행위자, 즉 개인을 전제로 한 것인데, 행위자가 아닌 법인이 형사상 책임을 지는가와 관련하여 범죄능력 또는 형별능력 인정 여부가 이론 상 논의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조세범처벌법은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도 벌금형에 처한다’는 양벌규정을 둠으로써 법인도 처벌하고 있음(조세범처벌법 제 3조).
- 법인범죄가 개인사업자의 범죄에 비해 포탈규모가 크고 조세포탈죄의 경우 포탈 세액에 비례하여 벌금상한선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법인에 의한 조세포탈시 개인 사업자보다 벌금형이 높을 가능성이 있지만, 동일한 금액을 포탈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인과 개인의 처벌수준에 차등을 두어 법인범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미국과 호주의 입법례를 참고).

마. 조세범죄에 대한 형법상 책임규정 전면적용

- 조세범처벌법은 특별형법으로 위반행위나 형량을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조세범은 기본적으로 형사범이기 때문에 형법상 일반원칙을 따를 필요가 있고 형법상 일반원칙을 벗어나는 예외규정을 두려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현행 조세범처벌법은 일부 유형⁶¹⁾의 조세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할 때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제10조 제2항(심신미약자), 제11조(농아자), 제16조(법률의 착오), 제32조 제3항(종범의 형 감경) 및 제38조(경합범의 가중처벌)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반면, 징역형에 처할 때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이러한 책임규정 배제조항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⁶²⁾.
 - 미성년자, 심신미약자의 법률행위(탈세)는 법정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1차적인 책임자는 법정대리인이고 미성년자와 심신미약자는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음.
 - 양벌규정에 의해 미성년자와 심신미약자에게 감독·관리상 과실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책임배제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책임규정 배제조항은 실효성이 적음.
 - 법률의 착오 배제조항은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미범죄는 법률의 착오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예외없이 고의범으로 처벌되는 반면,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는 현행 조세범처벌법상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률의 착오가 인정되면 처벌을 면하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함.

61) 무면허주류 제조·판매행위, 조세포탈행위, 조세체납행위, 원천징수불이행, 납세증명표식의 불법사용행위, 결손금액 과대계상행위가 해당된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행위는 제38조(경합범의 가중처벌)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만 배제된다.

62) 이천현, 전계논문, pp. 133~136.

- 종범감경 배제조항은 징역형으로 처벌할 경우 종범으로 형이 감경되는 데 반해 이보다 죄질이 경미하거나 소액을 탈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종범을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하게 되어 처벌의 형평을 기할 수 없음.
- 벌금경합 제한가중 배제조항은 실효성뿐만 아니라 현실적 필요성이 약함.
 - 일정한 경합범의 경우 형법이 병과주의를 택하지 않고 가중주의를 취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부과를 피하려는 것인데, 조세범처벌법이 예외규정을 둘으로써 조세범죄에 대한 벌금형 처벌은 배수벌금형 자체의 가중함에 병과주의에 의한 재가중, 가산세 부과 및 포탈세액 즉시징수 등으로 형벌의 정도가 지나치게 과중함.
 - 대법원 판례⁶³⁾에 의하면 벌금경합 제한가중규정 배제에 해당하는 범죄들이 비록 여러 개의 행위에 의해 이루어져도 대부분 포괄일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각 개별 행위에 대한 벌금액을 병과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동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적음.
- 미국,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조세범 처벌시 이러한 형사상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일본도 과거에 조세범에 대한 엄벌주의 입장에서 형사상 기본원칙을 따르지 않도록 규정했다가 형사책임 배제규정을 삭제한 지 오래되었음⁶⁴⁾.
- 우리나라의 경우 유독 조세범에 대해서만 형법상 책임원칙을 배제할 이유가 특별히 없을 뿐만 아니라, 주요국의 입법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형법 적용의 일부배제 규정은 재검토가 필요함.

63) 대법원 1984.4.10. 선고 83도938판결; 1990.7.10. 선고 90도308판결

64) 조세범처벌법이 형법총칙의 일부규정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1934년 일본의 조세범처벌제도가 조세범에 관해 두었던 특례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일본은 1944년부터 형법총칙의 적용배제 범위를 점차 축소해오다가 1962년에는 적용배제를 일체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이철송, 전개석, p. 80).

V. 결 론

- 본 보고서에서 연구자들은 우리나라 조세범 처벌제도 체계개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주요국(미국, 영국, 일본, 독일, 호주, 캐나다)의 제도들을 검토하였음. 여기에서 검토된 주요사항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 조세범처벌 관련 법규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조세범처벌법에는 크게 10개의 죄목이 규정되어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조세포탈범죄와 세금계산서범죄가 주로 적용되고 있음. 이는 범죄유형 분류가 체계적이지 않은 데 원인이 있으므로 범죄유형의 재구성이 요구됨.
 - 외국과 마찬가지로 신고납세주의가 적용되는 우리나라 세법의 특성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신고서와 같은 중요 신고서 또는 증빙서류의 허위신고 및 무신고는 독립된 유형으로 구분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음.
 - 장부 및 증빙서류 관련범죄의 규정이 산재(§11의2, 12의3, 13)되어 있는데, 하나의 규정으로 통합하여 가별성 정도에 비례한 처벌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만 유독 조세체납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부정한 행위가 개입되지 않은 단순한 납부의무불이행은 가별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상습적인 체납범의 경우 체납처분의 철저한 집행으로 충분히 제재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의 대상으로 존치할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명령사항위반 등 범죄 중 일부 유형은 가산세만 부과하도록 하고 범죄유형에서 삭제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형량수준은 일반형사범과의 처벌수준 및 외국의 유사사례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조세포탈범죄와 세금계산서범죄는 형량수준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어 오히려 엄격한 법적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경미범죄 중 일부는 지나치게 낮은 형량을 정하여 실무상 적용되지 않고 있음.

- 명령사항위반 등(§18) 규정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중에서 비범죄화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처벌수준을 현재보다 높일 필요가 있음⁶⁵⁾.
- 배수별금형을 취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그 상한을 2배로 설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를 반영하여 배수별금형 상한을 위반금액의 2배 수준으로 낮추어 과도한 처벌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행정상 제재와 형사상 제재를 함께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만⁶⁶⁾, 금전적 부담이 과도하면 오히려 위반행위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자의 균형관계를 고려할 필요도 있음.

- 조세범처벌법 규정은 범죄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최근 동 규정 중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을 위반한 자’(1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⁶⁷⁾을 받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게 됨. 조세범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명확하지 않은 문구나 표현에 대한 정비작업을 하지 않은 데 기인하는바, 다음과 같은 개선조치가 필요함.
- 별금형이 위반금액 등에 연동되는 경우 ‘당해 주세상당액’(§8) 또는 ‘~배에 상당하는 별금’(§9, 10, 11, 11의2①④, 12의3③)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별금형의 상한선을 정한 이상 불필요한 문구일 뿐만 아니라 ‘체납액에 상당하는 별금’(§11)은 체납액을 넘어도 된다는 의미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상당’이란 표현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12의2), ‘법에 의한 신고 또는 고지’(§13), ‘다른 세법

65) 형법상 범죄는 별금형 상한이 300만원~2,000만원인데, 조세범처벌법상 범죄는 배수별금형을 제외하면 5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별금형의 수준이 낮다.

66) 헌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이중처벌금지(이중처벌금지)의 원칙(원칙)”은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형벌권)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처벌(처벌)”은 원칙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제재)나 불이익처분(불이익처분)을 모두 그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4. 6. 30. 92헌바38)

67)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 아니라, 그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이 무엇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지를 예견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6헌가10 전원재판부)

이 비치를 요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12의3②)의 경우 어떠한 법률의 몇 조를 근거로 한 납세증명표지, 신고 또는 고지, 장부 또는 증빙서류인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 이외에 법인과 개인을 처벌할 경우 우리나라의 입법례에서 동일한 범죄에 대해 개인보다 법인의 벌금형 상한선을 높게 설정한 사례는 보이지 않지만, 법인에 대한 벌금형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제기⁶⁸⁾되고 있음.
 - 벌금형의 위하력은 법인과 개인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액벌금형이 설정된 경우 벌금형의 차등을 두는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조세범처벌법상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4)는 주요국의 입법례에서 찾아보기 힘든 규정일 뿐만 아니라, 일반형사법과의 균형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독 조세범만을 엄벌주의에 따라 처벌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삭제되는 것이 타당함.

68) 이천현 · 이승현, 『공정거래법상 형사적 제재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2006; 김광준 · 원범연, 『한국의 신종 기업범죄의 유형과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등

참고문헌

- 김광준 · 원범연, 『한국의 신종 기업범죄의 유형과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 김영진, 「재산형 집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김유찬, 『주요국의 조세제도-독일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 안대희, 『조세형사법』, 법문사, 2005.
- 오영근 · 조현지, 『조세범죄의 유형과 대처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 이철송, 『조세범처벌법의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6.
- 이천현 · 이승현, 『공정거래법상 형사적 제재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2006.
- 이천현, 「조세형법의 합리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0.
- 조용주, 「조세범처벌의 문제점과 적절한 양형을 위한 연구」, 『조세연구』 6집, 세경사, 2006.
- 한상국·오영근, 『조세범처벌법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9.
- CCH, *Tax Handbook*, 2006.
- CCH, *Australian master tax guide*, 2007.
- CCH, *Canadian Master Tax Guide*, 2004.
- Lars P.Feld 외 2인, *Tax Evasion, Black Activities and Deterrence in Germany*, IIPF, 2007.
- Tolly's, *Value Added Tax*, 2003.
- Tolly's, *Income Tax*, 2003.

Tolly's, *Corporation Tax*, 2003.

Tolly's, *Capital Gains Tax*, 2007.

Tiley & Collision, *UK Tax Guide*, 2006~07.

Thomson west, *Federal Tax Practice and Procedure*, 2005.

Thomson west, *Tax procedures and Tax fraud in a nutsell*, 3rd edition,
2006.

Woellner 외 3인, *Australian Taxation Law*, CCH, 2001.

영국 국세청 <http://www.hmrc.gov.uk>

호주 국세청 <http://www.ato.gov.au>

캐나다 국세청 <http://www.cra-arc.gc.ca>

IBFD <http://online2.ibfd.org/ca/>

부록 : 주요국의 조세범 관련 법규정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1. 미국의 조세범 관련 법조문(Internal Revenue Code, IRC)

제75장 범죄, 그 밖의 위반, 몰수 등

제7201조. 조세포탈 또는 조세저항 기도

본 세법에 의해 부과된 조세 또는 그에 대한 납부를 고의로 포탈 또는 침해하려고 한 자는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법에 의한 여타의 처벌에 병행하여 중죄로 처벌되며, 그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10만달러 (법인의 경우는 50만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제7202조.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및 불납부

본 세법에 의해 조세를 징수하여 그 명세서를 작성,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고의로 이를 징수하지 않거나 이에 대한 명세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죄로 취급하되 법에 의한 여타의 처벌에 병행하여 그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1만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제7203조. 신고 · 납부의무 불이행

본 세법에 의한 조세 또는 예납 세금을 납부하거나 또는 당국에서 제정한 법규에 의하여 신고서의 제출, 기록의 비치 보관 또는 소정의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고의로 태만한 자는 법에 의한 여타의 처벌에 병행하여 경죄 (misdemeanor)로써 처벌되며, 그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2만 5천달러 (법인의 경우는 10만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6654조 또는 6655조에서 그러한 불납부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예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도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6050I조의 규정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본 조항의 첫번째 문장에서 “경죄”는 “중죄”로 그리고 “1년”은 “5년”으로 대체되어 적용된다.

제7204조. 혀위신고죄 및 방조죄

(6674조에 규정된 처벌을 제외하고) 법에 의한 여타의 처벌 대신, 605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자가 고의로 사위 또는 혀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그러한 신고서 내지 진술서를 고의로 제시간에 제출하지 않거나 6051조에서 또는 그러한 조항에 규정된 법규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과세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각각의 위반 사례에 대해 1천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제7205조. 혀위 원천징수세액공제증명서 제출 및 정보제공의무 불이행

(a) 급료에 대한 원천징수

3402조에 의거하여 고용주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자가 고의로 혀위 또는 부당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3402조에 의거하여 원천징수 세액을 증가시켜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유죄 판

결이 내려지면 법에 의한 여타의 처벌에 병행하여, 1천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b)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예비 원천징수

개인이 3406(d)조의 (1) 또는 (2)(C) 항에 의거한 허위 증명서를 고의로 작성한 경우, 그러한 자는 그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법에 의한 여타의 처벌에 병행하여 1천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제7206조. 허위신고죄 및 방조죄

하기와 같은 자는 –

(1) 위증죄 처벌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언된 경우

고의로 보고서, 신고서 또는 기타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위증죄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명시된 서면 선언문을 포함하는 또는 그러한 문서에 의해 확인된 경우, 그리고 모든 중대한 사항이 진실되고 정확한 것이라 판단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2) 방조의 경우

국내 세법(internal revenue laws)에 의거하여 신고서, 진술서, 요청서 또는 기타 문서에서 발생된 중요한 문제에서 또는 그와 관련하여 문서의 작성이나 제출을 고의로 지원하거나 입수하거나, 조언을 제시하거나 자문을 제공한 경우로, 그러한 허위 또는 부당함이 그러한 신고서, 진술서, 요청서 또는 기타 문서를 제출하도록 허가된 또는 제출이 요구되는 자에게 알려져 있는지 또는 그러한 자의 동의를 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 허위 또는 부당한 지원을 제공한 경우, 또는

(3) 허위 보증서, 허가서, 등록서를 작성한 경우

국내 세법의 규정에서 또는 그에 따라 구성된 규정에서 요구되는 보증서, 허가서, 등록서를 모조로 작성하거나 허위 또는 사위로 작성 또는 서명한 경우 혹은 허위 또는 사위로 작성하도록 방조하거나 조언 또는 도움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문서 작성 과정에서 허위 또는 사위로 작성하는 것을 목과한 경우, 또는

(4) 허위 보고 목적으로 제거 또는 은폐한 경우

세금이 부과되거나 부과되어야 하는 물품이나 상품 또는 이러한 규정에 의거하여 부과된 세금의 사정 또는 징수를 회피 또는 무효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6331조에서 징수가 허가된 재산을 제거, 은닉 또는 은폐하거나 제거, 은닉 또는 은폐에 관여한 경우, 또는

(5) 타협 또는 종료 합의에 의한 경우

7122조에 의거한 타협 또는 그러한 타협의 제공과 관련하여 혹은 7121조에 의거한 종료 합의 또는 그러한 합의 체결 제공과 관련하여 고의로 –

(A) 재산을 은닉한 경우

납세자 또는 세금과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 기타 관련자의 재산에 해당되는 모든 재산을 미국 국세청 관리 또는 피고용인으로부터 은닉한 경우, 또는

(B) 기록 보류, 허위신고 및 파기

납세자 또는 세금과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 기타 관련자의 재산이나 재정 상태와 관련된 장부, 문서 또는 기록을 입수하거나, 보류 또는 파기하거나 중복 또는 허위로 구성하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중죄로 처벌되며, 그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기소와 함께 10만달러 (법인의 경우는 50만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다.

제7207조. 허위 신고서, 보고서 또는 기타 문서

중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허위이거나 사위인 것으로 알려진 목록, 신고서, 청구서, 보고서 또는 기타 문서를 국세청장에게 고의로 전달하거나 공개한 자는 1만달러 (법인의 경우는 5만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다. 6047(b)항, 6104(d)항 또는 527조의 (i) 또는 (j)항에 의거하여 국세청장이나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자가 중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허위이거나 사위인 것으로 알려진 정보를 국세청장이나 다른 사람에게 고의로 제공한 경우 1만달러 (법인의 경우는 5만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다.

제7208조. 인지와 관련된 위반행위

하기와 같은 자는 –

(1) 위조

허위의 목적을 가지고, 본 세법에 의해 부과된 세금의 징수 또는 납세를 위해 이러한 권한 범위 내에서 취득한 인지, 쿠폰, 티켓, 장부 또는 기타 수단을 속이고, 변경하고, 모조하고, 위조하거나 그러한 변경, 모조 또는 위조된 인지, 쿠폰, 티켓, 장부 또는 기타 수단을 판매, 대여 또는 소유하도록 하거나, 그러한 인지, 쿠폰, 티켓, 장부 또는 기타 수단의 제조시 사용된 모조 재료를 사용, 판매 또는 소유하도록 하는 경우, 또는

(2) 겹침 또는 제거

본 세법에 의해 부과된 세금에 대해 피지, 양피지, 종이, 문서, 서류, 패키지 또는 물품에서 접착성 인지 또는 이러한 권한을 위해 제공, 제작 또는 사용되는 인지, 다이, 플레이트 또는 기타 수단의 인영을 부당하게 절단, 파손 또는 제거한 경우, 또는

(3) 겹침, 불충분한 또는 위조된 인지의 사용

본 세법에 의해 부과된 세금에 대해 피지, 양피지, 종이, 문서, 서류, 패키지 또는 물품에 다음 항목을 부당하게 사용, 통합, 부착 또는 배치한 경우

- (A) 본 세법에 의해 부과된 세금에 대해 피지, 양피지, 종이, 문서, 서류, 패키지 또는 물품에서 절단, 파손 또는 제거된 접착성 인지 또는 인지, 다이, 플레이트 또는 기타 수단의 인영, 또는
- (B) 무의미한 접착성 인지 또는 인지, 다이, 플레이트 또는 기타 수단의 인영, 또는
- (C) 단조, 또는 위조된 인지, 또는 단조 또는 위조된 인지, 다이, 플레이트, 또는 기타 수단의 인영, 또는

(4) 인지 재사용

(A) 재사용을 위한 준비

이미 사용한 후에 다시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하는 의향을 가지고 접착성 인지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취소 또는 손상된 표시를 변경하거나 달리 구성한 경우, 또는

(B) 거래

사용을 목적으로 개인에게 표시를 삭제하거나 복원한 인지를 고의로 구매, 판매, 판매 목적으로 제공 또는 전달하거나 그러한 것으로 고의로 사용한 경우, 또는

(C) 소유

피지, 양피지, 종이, 문서, 서류, 패키지 또는 물품에서 제거된 표시가 삭제된, 복원된, 변경된 인지를 고의로 그리고 합법적인 면제 없이(피고에 대해 부여된 면제에 대한 증거 없이) 소유하는 경우, 또는

(5) 인지가 첨부된 빈 패키지

수입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개인을 속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7271조(인지가 부착된 패키지의 처분 및 수령과 관련하여)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범한 경우

중죄로 처벌되며, 그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1만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다.

제7209조. 인지의 무단 사용 및 판매

본 세법에서 또는 그에 의거하여 구성된 규정에서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세법에 의해 부과된 세금의 징수 또는 납세를 위해 본 세법에 의거하여 국세청장이 규정한 인지, 쿠폰, 티켓, 장부 또는 기타 수단을 구매, 판매, 판매 목적의 제공, 사용, 이전, 입수 또는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한 자는 그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1천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다.

제7210조. 소환장에 의거한 출석의무 불이행

6420(e)(2), 6421(g)(2), 6427(j)(2), 7602, 7603, 7604(b) 조항에 의거하여 요구되는 장부, 청구서, 기록, 각서 송장 또는 기타 문서의 작성 의무 불이행을 입증하기 위해 출석하거나 출석하여 작성하도록 정식으로 소환장이 발부된 자는 그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기소와 함께 1천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다.

제7211조. 세금과 관련하여 구매자 또는 임차인에게 허위보고서 작성

하기와 같이 물품의 판매나 임대 또는 판매나 임대를 위한 제공과 관련하여 혹은 그러한 판매나 임대를 위해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서를 작성한 자는 –

- (1) 그러한 물품을 판매나 임대 또는 판매나 임대를 위해 제공한 가격의 일부분이 미국 당국에서 부과한 세금으로 구성된다고 판단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로 또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또는
- (2) 미국 당국에서 부과한 세금에 그러한 금액의 특정 부분이 포함되는 것으로 하여,

그러한 보고서가 허위인 것을 알고 있거나 세금이 그러한 세금에 포함된 금액의 일부분으로 보기에 지나치게 많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경죄로 처벌되며 그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1천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다.

제7212조. 국내 세법의 집행을 방해하려는 기도

(a) 부패 또는 불법 방해

본 세법에 의거하여 공식 권한을 대행하는 미국 당국의 관리 또는 직원을 부정에 의해 또는 강제적인 힘이나 위협에 의해(위협적인 편지 또는 서신 포함) 위협하거나 방해하고자 시도하거나 혹은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부정에 의해 또는 강제적인 힘이나 위협에 의해(위협적인 편지 또는 서신 포함) 본 세법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하고자 시도한 자는 그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5천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가 강제적인 힘에 의한 위협으로 발생된 경우 그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3천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다. 본 항에 사용된 “강제적인 힘에 의한 위협”이라는 용어는 미국 당국의 관리 또는 직원이나 그 가족 구성원에 대한 신체적 상해 위협을 의미한다.

(b) 압류재산의 불법 탈환

본 세법에 의거하여 압류된 재산을 불법으로 탈환하거나 불법 탈환을 유도한 자 또는 그러한 불법 탈환을 기도한 자는 그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5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불법 탈환한 재산의 시가의 2배 이하에 상응하는 금액 중 보다 높은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되거나 2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제7213조. 정보의 무단 공개

(a) 신고서 및 신고내용

(1) 연방 직원 및 기타 개인

6103(n)조에 규정된 미국 당국의 관리 또는 직원이나 개인(또는 그러한 개인의 임원 또는 직원) 혹은 전임 관리나 직원이 본 세법에서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에게 (6103(b)에 규정된) 신고서 또는 신고내용을 부당하게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다. 본 조항의 위반은 중죄로 처벌되며, 그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기소와 함께 5천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위반행위가 미국 당국의 관리 또는 직원에 의해 발생된 경우, 그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다른 법에 의한 여타의 처벌에 병행하여 그러한 자는 해고 또는 고용 취소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2) 국가 및 기타 직원

6103조의 (d), (i)(3)(B)(i) 또는 (7)(A)(ii), (l)(6), (7), (8), (9), (10), (12), (15), (16), (19), 또는 (20) 또는 (m)(2), (4), (5), (6) 또는 (7)항에 의거하여 개인이나 다른 당사자가 획득한 (6103(b)에 규정된) 신고서 또는 신고내용을 본 세법에서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1)항에 규정되지 않은) 자에게 부당하게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다. 본 조항의 위반은 중죄로 처벌되며, 기소와 함께 5천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다.

(3) 기타 개인

(6103(b)에 규정된) 신고서 또는 신고내용을 본 세법에서 허가하지 않은 방법으로 공개한 후, 그러한 정보를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인쇄 또는 발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본 조항의 위반은 중죄로 처벌되며, 기소와 함께 5천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다.

(4) 유인행위

(6103(b)에 규정된) 신고서 또는 신고내용에 대한 교환으로서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품목을 부당하게 제공하고 그러한 유인행위의 결과로서 그러한 신고서 또는 신고

내용을 제공받는 것은 불법이다. 본 조항의 위반은 중죄로 처벌되며, 기소와 함께 5천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다.

(5) 주주

(6103(b)에 규정된) 신고서 또는 신고내용을 6103(e)(1)(D)(iii) 조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개하며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그러한 신고서 또는 신고내용을 부당하게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다. 본 조항의 위반은 중죄로 처벌되며, 기소와 함께 5천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다.

(b) 제조업체 또는 생산업체의 운영 업무 공개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개인에게 공식 업무 수행과정에서 그러한 개인이 방문한 제조업체 또는 생산업체의 운영 업무, 작업 스타일 또는 장치를 고의로 누설하거나 공개한 미국 당국의 관리 또는 직원은 경죄로 처벌되며, 그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기소와 함께 1천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다. 그러한 조세범은 해고 또는 고용 취소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c) 국세청장의 대리인에 의한 공개

미국 재무부의 관리 또는 직원에 의해 수행될 경우 본 세법에 의거한 직능과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정보의 공개와 관련된 모든 법규정 및 정보의 무단 공개에 대한 처벌과 관련된 모든 법규정은 7701(a)(12)(B) 조항의 의미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되는 자에 의해 수행될 경우 그러한 직능과 관련된 경우와 유사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d) 소프트웨어의 공개

7612조를 위반하여 (7612(d)(1)항에 규정된) 소프트웨어를 개인에게 고의로 누설하거나 공개한 자는 중죄로 처벌되며, 그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기소와 함께 5천

달리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다.

(e) 교차 참조

(1) 신고서 작성자에 의한 정보 공개에 대한 처벌

신고서 작성자에 의한 정보 공개 또는 정보 사용에 대한 처벌은 7216조를 참조

(2) 기밀 정보의 공개에 대한 처벌

미국 당국이나 정부부처의 관리 또는 직원에 의한 기밀 정보의 공개에 대한 처벌은 18 U.S.C. 1905를 참조

제7213A조. 신고서 또는 신고내용의 무단 검사

(a) 금지사항

(1) 연방 직원 및 기타 개인

다음의 개인이 –

(A) 미국 당국의 관리 또는 직원, 또는

(B) 6103조의 (l)(18) 또는 (n)항에 규정된 개인 또는 그러한 개인의 관리 또는 직원

본 세법에서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서 또는 신고내용을 부당하게 검사하는 것은 불법이다.

(2) 국가 및 기타 직원

본 세법에서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1)항에 규정되지 않은) 자가 7213(a)(2) 항에 명시된 610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러한 개인이나 다른 사람이 획득한 신고서 또는 신고내용을 부당하게 검사하는 것은 불법이다.

(b) 처벌

(1) 일반적인 처벌

(a) 항을 위반한 경우 처벌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기소와 함께 1천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 될 수 있다.

(2) 연방 관리 또는 직원

(a) 항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미국 당국의 관리 또는 직원은 여타의 처벌에 병행하여 해고 또는 고용 취소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c) 정의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검사”, “신고서” 및 “신고내용”과 같은 용어는 6103(b) 조 항에 규정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제7214조. 미국 당국의 관리 및 직원에 의한 위반행위

(a) 국세청 관리 또는 대리인의 불법행위

미국 세법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미국 당국의 관리 또는 직원으로 하기와 같은 자는 –

- (1) 법을 구실로 하여 갈취 또는 고의적인 직권남용 죄를 범한 자, 또는
- (2) 법에서 허가한 수준 이상의 금액을 고의로 요구하거나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 이행을 위해 수수료, 보상 또는 보수를 제공받은 자, 또는
- (3) 본 세법의 규정의 적용을 무효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고용 또는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또는
- (4) 미국 당국을 속이기 위해 다른 개인과 공모하거나 결탁한 자, 또는
- (5) 개인에게 미국 당국을 속일 수 있는 기회를 고의로 부여한 자, 또는
- (6) 다른 개인이 미국 당국을 속이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작위 또는 부작위를 행한 자, 또는

- (7) 장부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거나 그러한 장부에 서명하거나 허위증명서, 신고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한 자, 또는
- (8) 개인에 의한 세법 위반에 대한 또는 세법에 의거하여 미국 당국에 대해 개인이 범한 혐위행위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국세청장에게 그러한 지식이나 정보를 서면으로 보고하지 않은 자, 또는
- (9) 법에서 명백하게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수료의 타협, 조정 또는 청산 혹은 법을 위반하거나 위반 혐의에 대한 불만사항과 관련하여 그에 대한 총액이나 일정 부분을 지급액이나 금품의 형태로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수락하거나 징수를 기도한 자

해고 또는 고용 취소 조치가 내려지게 되며, 그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기소와 함께 1만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다. 법원은 자유재량권을 행사하여 벌금에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 규명된 정보제공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정보제공자의 사용을 위해 벌금 총액의 절반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부과된 금액을 제한 총액을 벌금 판정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손해를 입은 당사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액을 집행을 통해 해당관리나 직원에게 징수되도록 판결을 내릴 수 있다.

(b) 담배 또는 주류 제조에서 국세청 관리 또는 직원의 이익

담배, 코담배 또는 퀼련의 제조에 또는 증류주(distilled spirits) 제조, 정류 또는 재증류에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국세청 관리 또는 직원은 해고조치된다. 또한, 그러한 제조나 생산, 발효주의 정류 · 재증류 · 생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관리 또는 직원의 경우 각각에 대해 5천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c) 교차 참조

공공 기금이나 재산상 부채에 대해 거래하는 징수 또는 납세 관리에 대한 처벌은 18 U.S.C. 1901을 참조

제7215조. 징수된 세금과 관련된 위반행위

(a) 처벌

7512(b) 조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법에 의한 여타의 처벌에 병행하여 경죄(misdemeanor)로서 처벌되며, 그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기소와 함께 5천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b) 예외사항

이 조는 다음의 당사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1) (A) 법에서 세금 징수를 요구하는지 여부에 대한 합당한 의심이 있음을 제시한 경우 또는 (B) 법에 의거하여 세금 징수가 요구되는 자, 그리고
- (2) 통제 범위를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7512(b) 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한 경우

(2)항의 목적을 위해, 급료의 지불(그러한 급료의 지불에 의해 발생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직후 기존 기금의 부족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개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상황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7216조. 신고서 작성자에 의한 정보 공개 또는 사용

(a) 일반 규칙

1장에 의해 부과된 세금에 대한 신고서 작성 및 신고서와 관련하여 신고서 작성 업무에 관여하거나 그러한 서비스 제공에 관여하는 자 혹은 다른 개인을 위해 보수를 고려하여 그러한 신고서를 작성한 자 그리고 고의로 또는 무모하게 하기의 행위를 수행한 자는 –

- (1) 그러한 신고서 작성을 위해 또는 그와 관련하여 제공된 정보를 공개한 경우, 또는
- (2) 그러한 신고서 작성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정보를 사용하거나 그러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한 경우,

경죄(misdemeanor)로서 처벌되며, 그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기소와 함께 1천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b) 예외사항

(1) 공개

(a) 항은 그러한 공개가 다음에 의거한 경우, 정보의 공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A) 본 세법의 다른 규정에 의거하여, 또는

(B) 법원의 명령에 의거하여.

(2) 사용

(a) 항은 국가 및 지방 세금 신고서 그리고 그러한 정보와 관련이 있는 개인의 세금 예납 신고서의 작성에서 또는 그러한 작성과 관련하여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규정

(a) 항은 본 조항에 의거하여 국세청장이 규정한 규정에서 허가한 정보의 공개 또는 사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규정은 (그러한 규정과 같은 조건들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하여) 품질 심사 또는 동료 심사를 위해 정보의 공개 또는 사용을 허가한다

제7217조. 납세자 감사 또는 기타 조사에 대한 행정부의 영향력 행사 금지

(a) 금지

적합한 개인이 국세청 직원의 관리 또는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특정 납세자의 납

세 의무와 관련하여 그러한 납세자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수행하거나 종료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불법이다.

(b) 보고 요구사항

(a) 항에서 금지한 요청을 받은 국세청의 관리 또는 직원은 조세행정 총괄 재무 감사관(Treasury Inspector General for Tax Administration)에게 그러한 요청서 수령을 보고해야 한다.

(c) 예외사항

- (a) 항은 하기의 당사자에 의한 서면 요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1) 납세자에 의해 또는 그를 대신하는 적합한 자로 국세청에 그러한 적합한 자가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 (2) 6103조의 요구사항에 의거하여 그러한 요청이 발생된 경우 그러한 조항에 의거한 신고서 또는 신고내용의 공개에 적합한 자 또는
 - (3) 세금 정책의 변경을 이행한 결과로서 재무부 장관.

(d) 처벌

(a) 항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b) 항에 의거하여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처벌되며, 그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기소와 함께 5천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e) 적합한 자

-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해, “적합한 자”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
- (1) 대통령, 부통령, 대통령 집무실 직원, 부통령 집무실 직원 그리고
 - (2) 미 법령의 법규 5의 5312조에 규정된 직위로 직무를 수행하는 (미국연방법무장관이 아닌) 개인.

2. 일본의 조세범 관련 법조문

(1) 소득세법

제6 편 벌칙

제238조 혀위 등 부정행위에 의해, 제120조 제1항 제3호(확정 소득신고에 관계된 소득세액)(제166조(비거주자에 대한 준용)에 있어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한 소득세액(제95조(외국 세액공제)의 규정에 의하고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 동호의 규정에 의한 계산은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소득세액)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하거나 제142조제 2항(순손실의 반복에 의한 환급)(제166조에 있어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환급을 받았던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거나 양자를 병과한다.

2. 전항에서 면제한 소득세액 또는 동항의 환급을 받았던 소득세액이 500만엔을 초과할 때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동항의 벌금은 500만엔을 초과하고 면제한 소득세액 또는 환급을 받았던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제239조 혀위 등 부정행위에 의해, 제181조(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관계된 원천징수의무), 제183조(급여 소득에 관계된 원천징수의무), 제190조(연말 조정에 관계된 원천징수의무), 제192조(연말 조정에 관계된 부족액의 원천징수의무), 제199조(퇴직 소득에 관계된 원천징수의무), 제203조의 2(공적연금 등에 관계된 원천징수의무), 제204조 제1항(보수, 요금 등에 관계된 원천징수의무), 제207조 (생명보험계약 등에 근거한 연금에 관계된 원천징수의무), 제209조의 2(정기 적립금의 급부 보전금 등에 관계된 원천징수의무), 제210조(의명조합계약 등의 이익의 분배에 관계된 원천징수의무) 또는 제212조(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소득에 관계된 원천징수의무)의 규정에 의해 징수되어야 할 소득세가 면제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거나 양자를 병과한다.

2. 제203조 제1(퇴직소득의 수급에 관한 신고서)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

지 않고 제199조 및 제201조 제1항(퇴직소득에 관계된 원천징수세액)항의 규정에 의해 징수해야 할 소득세가 면제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거나 양자를 병과한다.

3. 전 2항에서 면제된 소득세액이 50만엔을 초과할 때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이러한 항의 벌금은 50만엔을 초과하고 면제된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제240조 제181조(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관계된 원천징수의무), 제183조(급여 소득에 관계된 원천징수의무), 제190조(연말 조정에 관계된 원천징수의무), 제192조(연말 조정에 관계된 부족액의 원천징수의무), 제199조(퇴직소득에 관계된 원천징수의무), 제203조의 2(공적연금 등에 관계된 원천징수의무), 제204조 제1항(보수, 요금 등에 관계된 원천징수의무), 제207조(생명보험계약 등에 근거한 연금에 관계된 원천징수의무), 제209조의 2(정기 적립금의 급부 보전 금등에 관계된 원천징수의무), 제210조(익명조합계약 등의 이익의 분배에 관계된 원천징수의무), 제212조(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소득에 관계된 원천징수의무) 또는 제216조(원천징수에 관계된 소득세의 납기의 특례)의 규정에 의해 징수하고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거나 양자를 병과한다.

2. 전항에서 납부하지 않았던 소득세액이 100만엔을 초과할 때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동항의 벌금은 100만엔을 초과하고 납부하지 않았던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3. 제181조, 제183조, 제190조, 제192조, 제199조, 제203조의 2, 제204조 제1항, 제207조, 제209조의 2, 제210조 또는 제212조에 규정한 지급을 한 경우에 지급을 받았던 자마다 지급금액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금액의 총액의 50%를 징수하고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으로 간주하고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41조 정당한 이유가 없이 제120조 제1항(확정 소득 신고), 제125조 제1항(연중에 사망한 경우의 확정 소득신고)항 또는 제127조 제1항(연중에 출국을 한 경우의 확정 소득신고)(이러한 규정을 제166조(비거주자에 대한 준용)에 있어 준용한 경우를 포함

한다.) 또는 제172조 제1(급여 등에 대해 원천징수를 받지 않는 경우의 신고)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그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단, 정상을 참작해 그 형을 면제할 수 있다.

제242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단,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한 자가 동호에 규정한 소득세에 관하여 제240조(원천징수에 관계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죄)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동 조의 예에 의한다.

1. 제112조 제1항 (예정 납세액의 감액의 인정의 신청절차)(제166조(비거주자에 대한 준용)에 있어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한 신청서 또는 제112조 제2(제 166조에 있어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항에 규정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고 세무서장의 인정을 받았던 자
2. 제180조 제1항(국내에 항구적 시설을 갖는 외국법인이 받는 국내 원천 소득에 관계된 과세의 특례), 제206조 제1항(원천징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보수 또는 요금) 또는 제214조 제1(원천징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 소득)항에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신청하고 이러한 규정에 규정한 증명서의 교부를 받았던 자, 제180조 제2항, 제206조 제2항 또는 제2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통지를 하지 않았던 자 및 제180조 제4항 또는 제2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않았던 자
3. 제181조(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관계된 원천징수의무), 제183조(급여 소득에 관계된 원천징수의무), 제190조(연말 조정에 관계된 원천징수의무), 제192조(연말 조정에 관계된 부족액의 원천징수의무), 제199조(퇴직소득에 관계된 원천징수의무), 제203조의 2(공적연금 등에 관계된 원천징수의무), 제204조 제1항(보수, 요금 등에 관계된 원천징수의무), 제207조(생명보험계약 등에 근거한 연금에 관계된 원천징수의무), 제209조의 2(정기 적립금의 급부 보전금 등에 관계된 원천징수의무), 제210조(의명조합계약 등의 이익의 분배에 관계된 원천징수의무) 또는 제212조(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소득에 관계된 원천징수의무)의 규정에 의해 징수해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았던 자

4. 제224조 제2항(이자, 배당, 상환금 등의 수령자의 고지) 또는 제4항에 규정한 고지서를 허위로 이러한 규정에 규정한 지급사무 취급자에게 제출한 자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지서를 제출시키지 않고 지급을 한 자 및 제224조의 2(양도성 예금의 양도 등에 관한 고지)에 규정한 고지서를 허위하고 동조에 규정한 금융기관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제출한 자
5. 제225조 제1(지급조서)항에 규정한 조서, 제226조 제1항으로부터 제3(원천징수표)항까지에 규정한 원천징수표 또는 제227조로부터 제228조의 3(신탁에 관한 계산서 등)에 규정한 계산서 또는 조서를 해당서류의 제출 기한까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거나 이러한 서류를 허위로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자
6. 제225조 제2항에 규정한 통지서 또는 제226조 제1항으로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원천징수표를 이러한 서류의 교부기한까지 이러한 규정에서 규정한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않거나 이러한 서류를 허위로 해당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한 자 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에 의해 허위 사항을 제공한 자
7. 제231조 제1(급여 등, 퇴직수당 등 또는 공적연금 등의 지급명세서)항에 규정한 지급명세서를 동항에 규정한 지급을 받는 자에게 동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하지 않거나 이것을 허위로 해당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한 자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에 의해 허위사항을 제공한 자
8. 정당한 이유가 없이 제226조 제4항 단서 또는 제23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거절하거나 제226조 제4항 단서에 규정한 원천징수표 또는 제23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한 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이러한 규정에 규정한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한 자
9. 제234조 제1(해당직원의 질문검사권)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직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거나 허위의 답변을 하거나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절·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전호의 검사에 대해 허위 기재 또는 기록을 한 장부 서류를 제시한 자

제243조 소득세에 관한 조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종사하고 있던 자가 그 사무에 관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2) 법인세법

제5편 벌칙

제159조 허위 등 부정행위에 의해, 제74조 제1항 제2호(확정신고에 관계된 법인세액)(제145조 제1(외국법인에 대한 준용)항에 있어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한 법인세액(제68조(소득세액의 공제)(제144조(외국법인에 대한 준용)에 있어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9조(외국세액의 공제)의 규정에 의해 공제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 동호의 규정에 의한 계산은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법인세액), 제81조의 22 제1항 제2(연결 확정신고에 관계된 법인세액)호에 규정한 법인세액(제81조의 14(연결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득세액의 공제) 또는 제81조의 15(연결 사업연도에 있어서 외국세액의 공제)의 규정에 의해 공제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계산은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법인세액), 제82조의 10 제1항 제2호 (특정 신탁의 확정신고에 관계된 법인세액)(제145조의 8(외국법인에 대한 준용)에 있어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한 법인세액(제82조의 6(특정 신탁에 관계된 소득세액의 공제)(제145조의 6(외국법인에 대한 준용)에 있어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2조의 7(특정 신탁에 관계된 외국세액의 공제)(제145조의 7(외국법인에 대한 준용)에 있어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해 공제되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 동호의 규정에 의한 계산은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법인세액), 제89조 제2호(퇴직연금 등 적립금 확정신고에 관계된 법인세액)(제145조의 12(외국법인에 대한 준용)에 있어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한 법인세액 또는 제104조 제1항 제2(청산 확정신고에 관계된 법인세액)호에 규정한 법인세액(제100조 제1(소득세액의 공제)항의 규정에 의해 공제되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 동호의 규정에 의한 계산은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법인세액)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거나 제80조 제6항(결손금의 반복에 의한 환급)(제81조의 31 제4항(연결법인에 대한 준용), 제82조의 15 제3항(특정 신탁에 대한 준용), 제145조 제1항 또는 제145조의 8에 있어 준용한 경

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환급을 받았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인격이 없는 사단 등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해당 법인이 연결법인인 경우에는 연결 자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제164조 제1항도 동일)으로서 그러한 위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거나 양자를 병과한다.

2. 전항에서 면제된 법인세액 또는 동항의 환급을 받았던 법인세액이 500만엔을 초과할 때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동항의 벌금은 500만엔을 초과하고 면제된 법인세 액 또는 환급을 받았던 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제160조 정당한 이유가 없이 제74조 제1항(확정신고)(제145조 제1(외국법인에 대한 준용)항에 있어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81조의 22 제1항(연결 확정신고), 제82조의 10 제1항(특정 신탁에 관계된 확정신고)(제145조의 8(외국법인에 대한 준용)에 있어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89조(퇴직연금 등 적립금에 관계된 확정신고)(제145조의 12(외국법인에 대한 준용)에 있어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04조 제1(청산 확정신고)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그러한 위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단,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을 면제할 수 있다.

제161조 제151조 제1항으로부터 제3(대표자 등의 본인 서명 날인)항의 규정(동조 제1항에 규정한 서류에 관계된 동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한다)에 위반한 자 또는 동조 제1항으로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 제1항에 규정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단,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을 면제할 수 있다.

제162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1. 제71조 제1항(중간 신고)(제145조 제1(외국법인에 대한 준용)항에 있어 준용한

-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로 제72조 제1항 각호(가결산을 한 경우의 중간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언급한 사항을 기재한 것, 제81조의 19 제1(연결중간 신고)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로 제81조의 20 제1항 각호(가결산을 한 경우의 연결중간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언급한 사항을 기재한 것, 제88조(퇴직연금 등 적립금에 관계된 중간 신고)(제145조의 12(외국법인에 대한 준용)에 있어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해당 신고서에 관계된 기한후 신고서를 포함한다), 제102조 제1(청산중의 소득에 관계된 예납 신고)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해당 신고서에 관계된 기한후 신고서를 포함한다) 또는 제103조 제1(잔여재산의 일부분배에 관계된 예납 신고)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해당 신고서에 관계된 기한후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허위로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그러한 위반 행위를 한 자
2. 제153조 또는 제154조 제1항 또는 제2항(해당직원의 질문검사권)(이러한 규정을 제155조(질문검사권에 관계된 준용)에 있어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해당직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거나 허위답변을 하거나 이러한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절 · 방해 · 기피한 자
 3. 전호의 검사에 관해 허위 장부 서류를 제시한 자

제163조 법인세의 조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종사하고 있던 자가 그 사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3) 소비세법

제 6 장 벌칙

제64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거나 양자를 병과한다.

1. 허위 등 부정행위에 의해 소비세를 면제받거나 보세지역에서 인수된 과세 화물에 대한 소비세를 면제받으려고 한 자
2. 허위 등 부정행위에 의해 제52조 제1항 또는 제5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을 받았던 자
3. 전항의 범죄에 관계된 과세 자산의 양도 등 또는 보세지역에서 인수된 과세 화물에 대한 소비세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환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500만엔을 초과한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동항의 벌금은 500만엔을 초과하고 해당 소비세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환급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제65조 제42조 제1항, 제4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로 제43조 제1항 각 호에 언급한 사항을 기재한 것에 허위기재를 하여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제66조 정당한 이유없이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동항 제4호에 언급한 소비세액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단,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을 면제할 수 있다.

제67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1. 제8조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고 동항 단서의 인정을 받지 않고서 동항의 물품의 양도 또는 양수(이러한 위탁을 받거나 중개를 위해 해당 물품을 소지하거나 양도를 위해 그러한 위탁을 받았던 자 또는 중개를 한 자에게 소지시키는 것을 포함한다)를 한 자
2.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을 소홀히 하거나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한 자

제68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 제1(동조 제2항에 있어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항 또는 동조 제3항의 규

정에 의한 해당직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거나 허위답변을 하거나 이러한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절·방해·기피한 자

2. 전호의 검사에 관해 허위의 기재 또는 기록을 한 장부 서류를 제시한 자

제69조 소비세의 조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종사하고 있던 자가 그 사무에 관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주세법

제9장 벌칙

제54조 제7조 제1항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 술밀, 또는 모로미를 제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2. 전항의 범죄에 착수해 제조에 이르지 않은 자도 동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3. 전2항의 범죄에 관계된 주류, 술밀, 또는 모로미에 대한 주세 상당액(술밀 또는 모로미에 관해서는 그 밖의 양조주로 간주하고 계산한 금액)의 3배가 50만엔을 초과할 때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전2항의 벌금은 50만엔을 초과하고 해당 상당액의 3배 이하로 할 수 있다.

4. 제1항 또는 제2항의 범죄에 관계된 주류, 술밀, 전국, 원료, 부산물, 기계, 기구 또는 용기는 누구의 소유인지를 불문하고 몰수한다.

5.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에 관계된 주류에 관해서 해당 주류를 제조했거나 제조에 착수해 제조에 이르지 않은 자로부터 바로 그 주세를 징수한다. 단, 전항의 규정에 의해 몰수된 주류에 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6.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에 관계된 술밀 또는 모로미는 그 밖의 양조주로 간주하고, 해당 술밀 또는 모로미를 제조한 자로부터 바로 그 주세를 징수한다. 단,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몰수된 술밀 또는 모로미는 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55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1. 허위 등 부정행위에 의해 주세를 면제받거나 면제받으려고 한 자
2. 허위 등 부정행위에 의해 제30조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자
2. 전항의 범죄에 관계된 주류에 대한 주세 또는 환급금 상당액의 3배가 50만엔을 초과할 때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동항의 벌금은 50만엔을 초과하고 해당 상당액의 3배 이하로 할 수 있다.

제56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1.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의 판매업을 한 자
2. 제30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 또는 제3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소홀히 한 자
3. 제30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소홀히 하거나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한 자
4. 제43조 제1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50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지 않았던 자
7. 제54조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원료, 기계, 기구 또는 용기를 준비한 자
2. 전항의 범죄(동항 제2호,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계된 주류, 술밀, 전국, 원료, 기계, 기구 또는 용기는 누구의 소유인지를 불문하고 몰수한다.
3. 제1항 제5호의 경우에 있어 주류, 술밀 또는 모로미의 제조자가 판명되지 않을 때에, 주류에 관해서는 범인으로부터 바로 그 주세를 징수하고, 술밀 또는 모로미에 관해서는 해당 술밀 또는 모로미를 그 밖의 양조주로 간주하고 범인으로부터 바로 그 주세를 징수한다. 단, 전항의 규정에 의해 몰수된 주류, 술밀 또는 모로미에는 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57조 제54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55조 제1항 또는 전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및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58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1.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자
 2. 제28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28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고 주류를 이출하거나 인수한 자로서 해당 주류를 그 이입선 또는 보관처에 이입하지 않은 경우
 3. 제31조 제6항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이출한 자
 4.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이출한 자
 5.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밀 또는 모로미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이출한 자
2. 제1항 제3호의 주류에 관해서는 이출시(제조장에 있어 주류를 처분한 경우(처분한 주류가 제조장에 현존한다면 나무를 제외한다)에 해당 주류를 주류의 제조장으로부터 이출한 것으로 간주한 때)바로 그 주세를 징수한다.
 3. 제1항 제4호의 주류에 관해서 바로 그 주세를 징수한다.
 4. 제1항 제5호의 술밀 또는 모로미는 그 밖의 양조주로 간주하고 제조자로부터 바로 그 주세를 징수한다.

제59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로 처벌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고 주류의 판매업을 한 자
2.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술밀 또는 모로미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이출한 자
3.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를 소홀히 하거나 기망하는 경우 또는 장부를 은닉한 자
4. 제5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로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지 않

았던 자

5. 제53조제1항,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직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거나 허위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절·방해·기피한 자
2. 전항 제2호의 술밀 또는 모로미는 그 밖의 양조주로 간주하고 제조자로부터 바로 그 주세를 징수한다.

제60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로 처벌한다.

1. 제2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제출을 소홀히 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2. 제47조 제1항으로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소홀히 하거나 기망하는 자
3. 제50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소홀히 하거나 기망하는 자

(5) 상속세법

제8장 벌칙

제68조 허위 등 부정행위에 의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거나 양자를 병과한다.

2. 전항에서 면제된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이 500만엔을 초과할 때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동항의 벌금은 500만엔을 초과하고 면제된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제69조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단,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할 수 있다.

제70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1.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조서에 허위기재 또는 기록을 하여 제출한 자
2.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절 · 방해 · 기피한 자
3. 전호의 검사에 관하고 허위기재 또는 기록을 한 장부 서류를 제시한 자
4.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는 자
5. 전호의 질문에 대하고 허위의 답변을 한 자

제72조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관한 조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종사하고 있던 자가 그 사무에 관하고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6) 국세통칙법

제10장 벌칙

제126조 제9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심리를 위한 질문, 검사 등)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거나 허위의 답변을 하거나 동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절 · 방해 · 기피하거나 해당 검사에 관해 허위의 기재 또는 기록을 한 장부 서류를 제시한 자는 3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단, 동조 제4항에 규정한 심사청구인등은 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7) 국세징수법

제10장 벌칙

제187조 납세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폐 · 파괴하거나

국익에 불이익하게 처분하거나 그 재산에 관계된 부담을 속이고 증가시킨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거나 양자를 병과한다.

2. 납세자의 재산을 점유한 제3자가 납세자에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전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3. 정을 알고 전 2항의 행위에 대해 납세자 또는 그 재산을 점유한 제3자의 상대방이 (가) 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거나 양자를 병과 한다.

제188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1. 제141조(질문 및 검사)의 규정에 의한 징수직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2.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절·방해·기피거나 해당 검사에 관해 허위의 기재 또는 기록을 한 장부 서류를 제시한 자

(8) 조세특별조치법

(특정 대체 국채 등의 양도의 대가 등의 지급조서 등의 제출 등에 관계된 벌칙) **제42조의 3**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1. 제41조의 12 제12항의 고지서를 동항의 대체 기재 등으로 받는 때에 동항에 규정한 특정 대체 기관 등의 영업소 등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고지서에 허위로 기재하여 해당 특정 대체 기관 등의 영업소 등의 장에게 제출한 자 또는 동조 제18항의 고지서를 동항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을 받는 때에 동항에 규정한 지급사무 취급자 또는 동항에 규정한 특정 대체 기관 등의 영업소 등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고지서에 허위로 기재하여 해당 지급사무 취급자에게 제출한 자
2. 제29조의 2 제5항에 규정한 특정 신주 예약권 등의 부여에 관한 조서 또는 동조 제6항에 규정한 특정 주식 등의 이동 상황에 관한 조서, 제37조의 11의 3 제7항

에 규정한 보고서, 제41조의 12 제21항에 규정한 특정 대체 국채 등의 양도 대가의 지급조서 또는 동조 제22항에 규정한 특정 대체 국채 등의 상환금 등의 지급조서 또는 제41조의 14제 4항에 규정한 선물거래에 관한 조서를 이러한 조서 또는 보고서의 제출 기한까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거나 이러한 조서 또는 보고서에 허위로 기재 또는 기록을 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자

3. 제37조의 11의 3 제7항에 규정한 보고서를 그 교부의 기한까지 동항에 규정한 거주자 또는 국내에 항구적 시설을 갖는 비거주자에게 교부하지 않거나 해당 보고서에 위조로 기재하여 해당 거주자 또는 국내에 항구적 시설을 갖는 비거주자에게 교부한 자 또는 동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에 의해 허위 사항을 제공한 자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37조의 11의 3 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거절하거나 동항 단서에 규정한 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하여 동항에 규정한 거주자 또는 국내에 항구적 시설을 갖는 비거주자에게 교부한 자
5. 제29조의 2 제9항, 제37조의 11의 3 제12항, 제41조의 12 제25항 또는 제41조의 14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직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거나 허위 답변을 하거나 이러한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절 · 방해 · 기피한 자
6. 제29조의 2 제9항, 제37조의 11의 3 제12항, 제41조의 12 제25항 또는 제41조의 14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관해 허위로 기재 또는 기록을 한 장부 서류를 제시한 자
2. 전항 제1호의 죄는 형법 제2조의 예에 따른다.
3. 제29조의 2 제5항에 규정한 특정 신주 예약권 등의 부여에 관한 조서 또는 동조 제6항에 규정한 특정 주식 등의 이동 상황에 관한 조서, 제37조의 11의 3 제7항에 규정한 보고서, 제41조의 12 제21항에 규정한 특정 대체 국채 등의 양도 대가의 지급조서 또는 동조 제22항에 규정한 특정 대체 국채 등의 상환금 등의 지급조서 또는 제41조의 14 제4항에 규정한 선물거래에 관한 조서의 제출에 관한 조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종사하고 있던 자가 그 사무에 관하고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국외 관련자와의 거래에 관계된 과세의 특례) 제66조의 4

12.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1. 제9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직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거나 허위의 답변을 하거나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절 · 방해 · 기피한 자
 2. 전호의 검사에 관해 허위의 기재 또는 기록을 한 장부 서류를 제시한 자

(특정 신탁에 관계된 국외 관련자와의 거래에 관계된 과세의 특례)

제68조의 3의 5

11.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1.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직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거나 허위의 답변을 하거나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절 · 방해 · 기피한 자
 2. 전호의 검사에 관해 허위의 기재 또는 기록을 한 장부 서류를 제시한 자

3. 호주의 조세법 관련 법조문(Taxation Administration Act 1953)

Part III. 기소 및 위반행위

Division 2 – 위반행위

Subdivision A – 세법상 요건 준수 위반

8C 세법상 요건준수 위반

- (1) 세법 규정에서 요구하는 다음 유형의 의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자는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진다.
- (a) 국세청장 등에게 승인된 양식이나 정보를 제공할 의무, 또는
 - (aa) 세법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세청장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 또는
 - (b) 조세부과를 위해 국세청장 등에게 문서(instrument)를 제출할 의무, 또는
 - (d) 국세청장 등에게 어떤 문제나 사건을 고지해야 할 의무, 또는
 - (e) 국세청장 등에게 장부, 문서, 기록 기타 서류를 제공해야 할 의무, 또는
 - (f) 국세청장 등 이전에 참석해야 할 의무, 또는
 - (g) 1999년 신조세체계법(A New Tax System(Goods and Services Tax) Act 1999)에 따라 등록이나 등록취소를 신청해야 할 의무, 또는
 - (h) Product Grants and Benefits Administration Act 2000 §45A(2)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

8D 국세청에 출석했을 때, 질문에 대한 답변거부

- (1) 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출석했을 때, 다음과 같은 세법상 의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자는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진다.
- (a) 국세청장 또는 다른 사람의 질문에 대해 답변할 의무
 - (b) 장부, 문서, 기록 기타 서류를 제출할 의무
- (2) 세법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다른 사람 이전에 참석할 때, 세법상 선서 또는 증언

의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자는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진다.

8E 세법상 요건준수 위반에 대한 제재

- (1) 동조 (2)(3) 규정에 따라, 8C 또는 8D(1)(2)의 위반행위는 2,200달러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 (2) 동조 (3)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1회 위반에 대해 4,400달러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 (a) 8C 또는 8D(1)(2)를 위반한 경우, 그리고
 - (b) 위반행위를 한 자가 과거에 관련 위반행위로 유죄였던 경우
- (3) 다음과 같은 경우 법원이 1회 위반에 대해 5,5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2개월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하거나 양자를 병과한다.
 - (a) 8C 또는 8D(1)(2)를 위반한 경우,
 - (b) 위반행위자가 자연인인 경우 – 국세청장은 8F(1)에 따라 세법위반 이외의 위반 행위로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 (c) 위반행위를 한 자가 과거에 2회 이상 관련 위반행위로 유죄였던 경우

8H 법원의 명령에 대한 불이행

- (1) 8G(1)에 의한 명령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자는 5,500달러 이하 벌금 또는 12개월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거나 양자를 병과한다.

Subdivision B – 진술, 기록, 다른 법률에 관한 위반

8K 혀위진술

- (1)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 (a) 세무공무원에게 진술을 한 자, 그리고
 - (b) 그러한 진술이 세부사항에서 혀위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 (1B)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 (a) 세무공무원에게 진술을 한 자, 그리고

- (b) 그러한 자가 진술에서 특정 사건 또는 사물을 생략한 경우, 그리고
- (c) 그러한 생략으로 인해 진술이 세부사항에서 허위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8L 부정확한 장부기록 등

- (1)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 (a) 세법상 계좌, 회계장부 기타 기록을 보존해야 할 자일 것, 그리고
 - (b) 그러한 자가 계좌 또는 기록을 보존할 것, 그리고
 - (c) 계좌 또는 기록이 관련된 사건, 거래, 행위, 운영 등을 정확하게 기록 또는 설명하지 않을 것
- (1A)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 (a) 세법상 사건, 거래, 행위, 운영 등을 기록해야 할 자일 것, 그리고
 - (b) 그러한 자가 기록할 것, 그리고
 - (c) 해당 기록이 사건, 거래, 행위, 운영 등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을 것

8M 8K(1)(1B), 8L(1)(1A) 위반에 대한 제재

- (1) 동조(2)에 따라 8K(1)(1B), 8L(1)(1A)의 위반은 2,200달러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 (2) 다음의 경우 1회 위반에 대해 4,400달러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 (a) 8K(1)(1B), 8L(1)(1A)를 위반한 경우; 그리고
 - (b) 위반행위를 한 자가 과거에 관련 위반행위로 유죄였던 경우

8N 무모한(Recklessly) 혀위진술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 (a) 세무공무원에게 진술을 한 자일 것, 그리고
- (b) 진술요건:
 - (i) 진술이 세부사항에서 허위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또는
 - (ii) 진술이 세부사항에서 허위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고, 진술에서 특정 사건 또는 사물을 생략한 경우, 그리고

- (c) 아래의 진술에 대해 무모한 자일 것.
- (i) 진술이 세부사항에서 허위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또는
 - (ii) 진술이 세부사항에서 허위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고, 진술에서 특정 사건 또는 사물을 생략한 경우, 그리고

8Q 무모한 부정확 장부기록

- (1)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 (a) 세법상 계좌, 회계장부 기타 기록을 보존해야 할 자일 것, 그리고
 - (b) 그러한 자가 계좌 또는 기록을 보존할 것, 그리고
 - (ba) 계좌 또는 기록이 관련된 사건, 거래, 행위, 운영 등을 정확하게 기록 또는 설명하지 않을 것, 그리고
 - (c) 계좌 또는 기록이 관련된 사건, 거래, 행위, 운영 등을 정확하게 기록 또는 설명하지 않을 것에 대해 무모한 자일 것
- (2)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 (a) 세법상 사건, 거래, 행위, 운영 등을 기록해야 할 자일 것, 그리고
 - (b) 그러한 자가 기록할 것, 그리고
 - (ba) 해당 기록이 사건, 거래, 행위, 운영 등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을 것
 - (c) 해당 기록이 사건, 거래, 행위, 운영 등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을 것에 대해 무모한 자일 것

8R 8N, 8Q 위반에 대한 제재

- (1) 동조(2)에 따라 8N, 8Q의 위반은 3,300달러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 (2) 다음의 경우 1회 위반에 대해 5,5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2개월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거나 양자를 병과한다.
 - (a) 8N, 8Q를 위반한 경우, 그리고
 - (b) 위반행위자가 자연인인 경우 – 국세청장은 8S(1)에 따라 세법위반 이외의 위반 행위로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 (c) 위반행위를 한 자가 과거에 관련 위반행위로 유죄였던 경우

8T 기망 목적의 부정확 장부기록

다음과 같이 특정의도로 특정 위반행위를 한 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위반행위〉

- (a) 계좌, 회계장부, 기타 기록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보존하는 경우
 - (i) 관련 사건, 거래, 행위, 운영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거나 설명하지 않는 방식, 또는
 - (ii) 가독·해독하기 힘들거나 동일성을 식별하기 어려운 방식
- (b) 정확하게 사건, 거래, 행위, 운영을 기록하지 않는 경우
- (c) 계좌, 회계장부, 다른 기록을 변경, 마모, 훼손, 위조, 손상, 제거, 은닉 또는 파괴하는 행위에 참여하는 경우
- (d) 계좌, 회계장부, 다른 기록에 다른 행위나 항목을 기입하거나 생략하는 경우

〈의도〉

- (e) 국세청 또는 특정 세무서를 기망하거나 오해하게 할 목적
- (f) 범칙조사가 아닌 상황에서 국세청 또는 특정 세무서를 지체하게 하거나 방해할 목적
- (g) 범칙조사를 지체하게 하거나 방해할 목적
- (h) 세법의 적용, 집행을 지체하게 하거나 방해, 무효화할 목적
- (j) 세법 목적에 반할 목적

8U 기망 목적의 신원위조 또는 은닉

다음과 같이 특정의도로 특정 위반행위를 한 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위반행위〉

- (a) 특정한자의 신분,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주소 및 위치를 조작하거나 숨기는 행위에 참여하는 경우
 - (b) 특정한자의 신분,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주소 및 위치를 조작하거나 숨기기 쉽도록 조치를 취하는 경우
- ### 〈의도〉
- (c) 국세청 또는 특정 세무서를 기망하거나 오해하게 할 목적

- (d) 범칙조사가 아닌 상황에서 국세청 또는 특정 세무서를 지체하게 하거나 방해할 목적
- (e) 범칙조사를 지체하게 하거나 방해할 목적
- (f) 세법의 적용, 집행을 지체하게 하거나 방해, 무효화할 목적
- (g) 세법 목적에 반할 목적

8V 8T,8U 위반에 대한 제재

- (1) 동조(2)에 따라 8T, 8U의 위반은 5,5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2개월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거나 양자를 병과한다.
- (2) 다음의 경우 1회 위반에 대해 11,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거나 양자를 병과한다.
 - (a) 8T, 8U를 위반한 경우, 그리고
 - (b) 위반행위를 한 자가 과거에 관련 위반행위로 유죄였던 경우

Subdivision BA – 세금신고번호 관련 위반

8WA 세금신고번호 인용에 대한 부적격 신청

- (1) 어떠한 자에게 다른 사람의 세금신고번호를 인용하도록 요구하거나 신청해서는 안된다.

제재 : 11,000달러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 병과

(1AA) 동조(1)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 (a) 세법 또는 1936년 소득세 부과법 §202(e)의 규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세금신고 번호를 인용하도록 허용된 경우, 또는
 - (b) 세법 또는 1936년 소득세 부과법 §202(c), (d), (g), (ga), (h), (ha), (hb), (hc), (i), (ia), (j), (m), (n)에서 언급된 종류의 연방법에 따라 집행권을 행사하거나 기능을 수행하는 것 또는 동조항에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세금신고번호를 요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 또는
 - (c) 다른 사람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그 자를 대리하여 행동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세금신고번호를 요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

8WB 권한없는 자의 세금신고번호 기록 등

(1) 다음의 행위를 하면 안된다.

- (a) 제3자의 세금신고번호를 기록하거나 그러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
- (b) 제3자의 세금신고번호를 또다른 자의 신분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제3자의 세금신고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c) 어떤 자의 세금신고번호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제재: 11,000 달러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 병과

(1A) 동조(1)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 (a) 세법 또는 1936년 소득세 부과법의 §202(c), (d), (e), (g), (ga), (h), (ha), (hb), (hc), (i), (ia), (j), (ka), (m), (n) 또는 (o)에서 언급된 종류의 연방법에서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범위 또는 동조항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수적·합리적으로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범위, 또는
- (b) 세법 또는 1936년 소득세 부과법의 §202(c), (d), (e), (g), (ga), (h), (ha), (hb), (hc), (i), (ia), (j), (ka), (m), (n) 또는 (o)에서 언급된 종류의 연방법에 따라 집행권을 행사하거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또는
- (c) 다른 사람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그 자를 대리하여 행동하는 경우

8WC 세금신고번호 요건 회피행위

(1)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a) 동종의 2개 이상의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자일 것, 그리고

(b) 다음과 같이 간주되는 경우.

(i) 그러한 자가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되는 방식, 그리고

(ii) 이러한 방식으로 투자자가 된 점에 대해 그러한 자에 의한 설명

다음 (iii)을 확보 또는 확보를 위한 시도 목적으로 단독 또는 지배의 방식으로 투자자가 된 자라고 단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iii) 그러한 자가 1936년 소득세 부과법 Part VA에 따라 그러한 투자들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세금신고번호를 인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A) 1개 이상 non-TFN 투자에 대한 소득에서 금액이 동법 Division 3B에 따라 공제되지 않은 경우, 또는 금액을 동법 Schedule 1 §12-140, §12-145에 따

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B) 1개 이상 non-TFN 투자에 대한 소득과 관련하여 동법 Schedule 1 §14–5에

따라 국세청에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C) 1개 이상 non-TFN 투자에 대한 소득과 관련하여 동법 Schedule 1 §14–55에

따라 TFN 원천징수세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또는

(iv) 당해 투자는 위 법률의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서에 언급되지 않을 것

제재: 11,000 달러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 병과

Subdivision C – 기타

8XA 권한 없는 자의 세무정보 접근

다른 사람의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을 의도로 소송하면 안된다.

(a) 국세청이 보유하는 기록에 포함된 정보일 것, 그리고

(b) 세법 규정에 따라 또는 세법상 목적을 위해 국세청장이 보유하거나 취득한 정보일 것

다음의 경우는 제외된다.

(c) 그러한 소송이 1982년 정보자유법 또는 국세심판원 절차에 수반되는 경우, 또는

(d) 세법상 기능수행 또는 권한 행사의 과정에서 제기된 경우

제재: 11,000달러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 병과

8XB 비밀준수

(1) (3)에 따라 그러한 세무정보가 세법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거나 취득한 정보라면,

직·간접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하면 안된다.

(a) 다른 사람과 관련된 세무정보를 기록하는 경우, 또는

(b) 직·간접적으로 제3자와 관련된 세무정보를 또 다른 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또는

(c) 직·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에 관한 세무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에

제재: 11,000달러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 병과

(1A) (1)은 그러한 소송이 세법에서 요구되거나 허용된 경우 또는 세법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수적이고 합리적인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4. 캐나다의 조세법 관련 법조문

(1) 소득세법

XV. Administration and enforcement

Offences and Punishment

Offences and punishment

238. (1)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요구되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작성하지 않은 자 또는 소득세법 §116(3), §127(3.1) 또는 §129(3.2), §147.1(7) 또는 §153(1), §232 또는 §147.1(18)과 관련한 시행규칙에 대한 §230 규정 또는 238(2)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다른 규정에 의한 가산세에 부가하여 약식기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 (a) 1천달러 이상 2만 5천달러 이하 벌금, 또는
- (b) §238(1)(a)에서 정한 벌금과 12개월 이하의 징역 병과

Compliance orders

238. (2)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규칙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법원이 §238(1) 위반의 협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Saving

238. (3) 소득세법 또는 동법 시행규칙을 준수하지 않아 동조의 협의를 받는 자는 그러한 협의를 받기 이전에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은 이상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162, §227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Other offences and punishment

239. (1) (a)~(e)의 행위를 한 자는 다른 규정에 의한 가산세에 부가하여 약식기소에 따라 (f)~(g)로 처벌한다.

- (a) 소득세법 또는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신청되거나 작성된 신고서, 증명서, 진술서, 답변서에 허위 또는 기망의 내용을 작성하거나 그러한 작성행위에 참여하거나 동의 또는 묵인하는 경우
- (b) 소득세법에 따라 부과된 세금납부를 포탈(evade)하기 위해, 납세자의 기록 또는 회계장부를 파괴, 변경, 훼손, 은닉 또는 처분하는 경우
- (c) 납세자의 기록이나 회계장부에 특별한 항목을 기입하기 위해 허위 또는 기망의 계정을 만들거나 그러한 작성행위에 동의 · 묵인하는 행위 또는 생략하거나 그러한 생략행위에 동의 · 묵인하는 경우
- (d) 고의에 의해 어떠한 방법이든, 포탈하는 행위 또는 소득세법상 의무 또는 소득세법상 부과되는 세금납부를 포탈하기 위해 시도하는 행위
- (e) 위의 행위들에 공모하는 경우
- (f) 포탈하고자 했던 세액의 50% 이상 200% 이하의 벌금, 또는
- (g) 239(1)(f)에서 정한 벌금과 2년 이하의 징역의 병과

Offenses refunds and credits

239(1.1) (a)~(e)의 방식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거나 신청할 자격이 없는 자를 위해 소득세법상 환급 또는 공제를 받거나 신청하거나, 정당한 환급액 또는 공제액을 받은 금액에 대해 환급 또는 공제를 받거나 신청하는 자는 다른 규정에 의한 가산세에 부가하여 약식기소에 따라 (g)~(h)로 처벌한다.

- (a)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청하거나 작성된 신고서, 증명서, 진술서, 답변서에 허위 또는 기망의 내용을 작성하거나 그러한 작성행위에 참여 · 동의 · 묵인하는 방식
- (b) 부당환급 또는 부당공제를 받으려는 자의 기록 또는 회계장부를 파괴, 변경, 훼손, 은닉 또는 처분하는 방식
- (c) 부당환급 또는 부당공제를 받으려는 자의 기록 또는 회계장부에 허위 또는 기망

의 계정을 기입하거나 그러한 기입행위에 동의 · 묵인하는 방식, 부당환급 또는 부당공제를 받으려는 자의 기록 또는 회계장부에 특별한 항목을 추가하기 위해 생략하거나 그러한 생략행위에 동의 · 묵인하는 방식

- (d) 어떠한 방식으로든 고의적인 방식
- (e) 위의 위반행위에 공모하는 방식
- (f) 정당하게 환급 또는 공제받을 금액을 초과하여 받거나 신청한 금액의 최소 50% 이상 최대 200% 이하의 벌금, 또는
- (g) §239(1.1)(g)에서 정한 벌금과 2년 이하의 징역 병과

Prosecution on indictment

239. (2) §239(1) 또는 §239(1.1)에서 규정한 위반행위를 한 자는 Attorney General of Canada의 선택에 따라 정식기소될 수 있고,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다른 규정에 의한 가산세에 부가하여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 (a) 포탈하려는 세액 또는 부당 환급 또는 공제받으려는 세액의 100% 이상 200% 이하의 벌금, 그리고
- (b) 5년 이하의 징역

Providing incorrect tax shelter identification number

239. (2.1) 조세피난처의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부정확한 신분번호를 제공하는 자는 다른 규정에 의한 가산세에 부가하여 약식기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 (a) 조세피난처에서 얻은 그 사람의 이익 중 다른 자에 대한 비용의 100% 이상 200% 이하의 벌금,
- (b)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 (c) §239(2.1)(a)에서 정한 벌금과 §239(2.1)(b)에서 정한 징역형을 병과

Offence with respect to confidential information

239. (2.2) 다음을 위반한 자는 약식기소에 따라 5천달러 이하 벌금 또는 12개월 이하

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거나 양자를 병과한다.

- (a) 소득세법 §241(1), 또는
- (b) §241(4.1)에 따라 내려진 명령을 알면서도 위반하는 경우

Idem

239. (2.21)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자 그리고 그 밖의 목적을 위해 알면서도 그러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한 정보에 접근하게 한 자는 약식기소에 따라 5천달러 이하 벌금 또는 12개월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거나 양자를 병과한다.

- (a) 소득세법 §241④(b),(c),(e),(h),(k),(n),(o),(p)에 따라 특별한 목적을 위해 납세자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 (b) 소득세법 §241(a),(d),(f),(f.1),(i) 또는 (j.1)에 따라 특별한 목적을 위해 납세자 정보를 제공받은 공무원인 경우

Offence with respect to an identification number

239. (2.3) 개인의 사회보장번호나 납세자나 파트너십의 사업자번호를 제공받은 경우, 공무원, 근로자 또는 그 대리인이 개인, 납세자 또는 파트너십의 서면 동의 없이 알면서도 사회보장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를 사용하거나 전달하거나 전달받게 하는 경우에 약식기소에 따라 5천달러 이하 벌금 또는 12개월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거나 양자를 병과한다.

Interest coupon to be identified in prescribed manner – offence and punishment

240. (2) 1966년 7월 14일 이후 다음을 발행하였고, 그러한 증서가 채무존재 증거의 한 부분으로 형성되지 않거나 채무존재 증거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쿠폰이나 다른 서면에 의해 이익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경우, 그러한 쿠폰이나 다른 서면이 규정된 방식(조세채무증서의 경우 ‘AX’, 비조세채무증서의 경우 ‘F’라 표기)으로 기재되거나 확인되지 않으면 약식기소에 따라 5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a) 조세채무증서, 또는
- (b) 비조세채무증서

(2) 소비세법

Part VII General

Offence and punishment

65. 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1천달러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Punishment for failure to pay or collect taxes or affix stamps

96.(1) 소비세법에 따라 세금 기타 금액을 납부하거나 징수하거나 인지를 붙이거나 취소해야 하는 자가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약식기소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벌금으로 처벌하고,

- (a) 납부 또는 징수해야 할 세금 또는 첨부 또는 취소해야 하는 인지대에 25달러를 합산한 금액 이상
- (b) 납부 또는 징수해야 할 세금 또는 첨부 또는 취소해야 하는 인지대에 1천달러를 합산한 금액 이하

위의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30일 이상 12개월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Punishment for contravention

96.(2) 처벌을 수반하지 않는 소비세법 또는 동법 시행규칙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약식기소에 따라 50달러 이상 1천달러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Failing to file return

97.(1) 세금을 신고해야 할 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달러 이상 1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False or deceptive statements

97.(2) 다음과 같은 때에

(a) 파트 I 을 제외한 모든 파트에 따라 세금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또는

(b) 소비세법 §68, §70에 따라 신청된 경우

신고서나 신청서에 허위 또는 기망의 내용을 작성하거나 그러한 작성행위에 동의 ·

묵인하는 경우 약식기소에 따라

(c) 다음에 100달러를 합산한 금액 이상

(i) 그 신고서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세액의 2배

(ii) 신청서에 따라 얻게 되는 세금 등 금액의 2배

(d) 세금 등 금액의 2배에 1천달러 이하를 합산한 금액을 벌금으로 처벌하고,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2개월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Offence

99.(2) 소비세법 §99①에 의한 고지의무에 위반하는 경우 다른 규정에서 정한 가산세
에 추가하여 약식기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a) 200달러 이상 1만달러 이하의 벌금

(b) (a)에서 정한 벌금과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병과

Where records or books not kept as required

100.(3) 소비세법 §100(2)규정에 따라 기록 또는 회계장부의 양식과 이에 포함된 내
용을 보존해야 하는 자가 그러한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 약식기소에 따라 25달러 이상
1천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러한 벌금을 내지 않으면 2개월 이상 12개월 이
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Failure to make records and books available

100.(4) 소비세법 §98(3)을 위반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세무공무원이나 승인받은 자
가 §98(1)에 의해 보존해야 할 기록 또는 회계장부에 접근 또는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
거나 방해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경우, 약식기소에 따라 200달러 이상 2천달러 이하

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거나 양자를 병과한다.

Compliance

101. 물리적으로 또는 다른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자는,
- (a) 소비세법에 따라 승인받은 공무원의 행위에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 (b) 소비세법에 따라 승인받은 공무원의 행위를 지연시키거나 저지하는 행위
 - 다른 규정에서 정한 가산세에 부가하여 약식기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 (c) 1천달러 이상 2만 5천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 (d) (c)에서 정한 벌금과 12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병과

Destroying records and making false entries

102.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 (a) 세금납부를 회피할 목적, 소비세법에 의한 의무규정을 회피할 목적, 탈세를 위해 다른 자를 도우려는 목적 또는 소비세법에 의한 의무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자를 도우려는 목적으로 소비세법 §98①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하는 기록, 회계장부를 파괴, 변경, 훼손하는 경우
- (b) 소비세법 §98①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하는 기록, 회계장부에 특별한 항목을 기입하기 위해 허위 또는 기망의 계정을 작성하거나 그러한 작성행위에 동의 · 승인하는 경우 또는 생략하거나 그러한 생략행위에 동의 · 승인하는 경우 약식기소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벌금으로 처벌하고
- (c) 납부하거나 징수해야 할 세액 또는 첨부 또는 취소해야 하는 인지대의 2배에 100달러를 합산한 금액 이상
- (d) (c)에서 정한 세금 또는 인지대의 2배에 1천달러를 합산한 금액 이하 그러한 벌금을 내지 않으면 3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107.(4)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 (a) 정당한 사유없이 소비세법에 규정된 검사 또는 조사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 (b) 소비세법의 규정에 따라 점유중이거나 지배권이 미치는 서류, 장부, 문서를 제

공하지 않는 경우

- (c) 소비세법 §107에 따른 검사 또는 조사에서
- (i) 서약, 확인 또는 공표를 거절하거나
 - (ii) 검사 또는 조사과정중에 제기된 정당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약식기소에 따라 20달러 이상 400달러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Offence of evasion

108. 어떤 방식으로든 고의적으로 소비세법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탈세하거나 무효로 하기 위해 시도하는 경우 약식기소에 따라 1만 2천달러 이하 벌금 또는 12개월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하거나 양자를 병과한다.

Part IX Goods and Services Tax

Subdivision f Offences

Offences

326.(1) 본 파트(상품서비스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작성하지 않는 행위 또는 소비세법 §286②, §291② 규정에 위반하거나 §326②의 이행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1천달러 이상 2만 5천달러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거나 그러한 벌금과 12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병과한다.

Offences

327.(1)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 (a) 본 파트 또는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제출 또는 작성한 신고서, 신청서, 증명서, 진술서, 서류 또는 답변서에 허위 또는 기망의 내용을 작성하거나 그러한 작성행위에 참여 · 동의 · 묵인하는 경우
- (b) 다음의 방식으로 본 파트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의 지급 또는 송금을 회피하거나 동 규정에 따라 자격이 없는 자에게 세금환급을 받게 하는 경우

- (i) 서류를 파괴 · 변경 · 훼손 · 은닉 · 처분하는 방식으로, 또는
- (ii) 혀위 · 기망의 계정을 작성하거나 그러한 작성행위에 동의 · 묵인하거나 특별한 항목을 기입하기 위해 (다른 항목을) 생략하거나 그러한 생략행위에 동의 · 묵인하는 방식,
- (c) 어떤 방식으로든 고의로 본 파트에 따른 의무이행 또는 세금납부를 회피하거나 회피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 (d) 어떤 방식으로든 고의로 본 파트에서 정하지 않은 자에게 세금환급을 받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시도하는 경우
- (e) (a)에서 (c)까지 정한 행위에 공모하는 경우
약식기소에 따라 다른 규정에서 정한 가산세에 부가하여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 (f) 회피 또는 부당환급 받으려는 세액의 50% 이상 200% 이하의 벌금 또는 회피하려는 금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1천달러 이상 2만 5천달러 이하의 벌금
- (g) (f)에서 정한 벌금과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병과

Prosecution on indictment

- 327.(2) (1)에서 정한 위반행위를 한 자는 Attorney General of Canada가 정식기소하여 유죄로 확정되면 다른 규정에서 정한 가산세에 부과하여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 (a) 회피 또는 부당환급 받으려는 세액의 100% 이상 200% 이하의 벌금 또는 회피하려는 금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2천달러 이상 2만 5천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 (b) 위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병과

Offence reconfidential information

- 328.(1)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 (a) §295(2)(정보제공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는
 - (b) §295(5)(미승인 사용 · 공개 예방조치)를 위한 명령을 알면서도 위반하는 경우
약식기소에 따라 5천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2개월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거나 양자를 병과한다.

Idem

328.(2) 다음과 같이

- (a) §295(5)(b),(c),(g),(k),(l),(m)(n)의 특정한 목적에 따라 비공개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또는
- (b) 공무원으로서 §295(5)(a),(d),(e),(h)의 특정한 목적에 따라 비공개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이고 알면서도 다른 목적으로 그러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누군가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을 허락하거나 누군가가 접근하도록 하는 경우 약식기소에 따라 5천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2개월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거나 양자를 병과한다.

Failure to pay, collect or remit taxes

329.(1) 고의로 본 파트에서 규정하는 세금의 납부 · 징수 · 송금하지 않는 경우 다른 규정에 의한 가산세에 부가하여 약식기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 (a) 납부 · 징수 · 송금해야 하는 세액의 20%에 1천달러를 합산한 금액 이하의 벌금, 또는
- (b) (a)에서 정한 벌금과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병과

General offence

329.(2)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본 파트에 따른 위반행위는 약식기소에 따라 1천달러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Offence

368.(1) 조세포함 가격결정에 관한 규정(소비세법 §364-368)에 위반한 경우 약식기소에 따라 100달러 이상 5천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30일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하거나 양자를 병과한다.

세법연구 07-14
주요국의 조세범처벌제도 연구

2007년 12월 22일 인쇄

2007년 12월 29일 별행

저 자 김진수 · 김정아 · 마정화

발행인 황 성 현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존판 및
인쇄 고려문화사

© 한국조세연구원 2007

ISBN 978-89-8191-390-8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